

헌 법

조례 및 시행세칙

2023년도 개정판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Assemblies of God Korean District Council

[목차]

헌 법

헌법적 선언	5
제1조 명칭	7
제2조 범위	7
제3조 본질	7
제4조 직무와 특권	7
제5조 원칙	8
제6조 믿음의 교의: 근본진리에 대한 선언	9
제7조 상호 관계	18
제8조 회원	19
제9조 회의	20
제10조 임원	22
제11조 개교회	22
제12조 해산	26
제13조 개정	26
부칙	27

조 례

제 1조 총칙	29
제 2조 임원선출	30

재 3조 임원의 직무	33
제 4조 위원회 및 기관	35
제 5조 지방회	37
제 6조 개교회	40
제 7조 교역	48
제 8조 권징	77
제 9조 개정	89
부칙	91

개교회 운영세칙

제 1조 정치	92
제 2조 담임 교역자 청빙.....	101
재 3조 교역자의 사례와 복지.....	103
제 4조 성도의 생활규범.....	104
제 5조 권징.....	106
제 6조 의무.....	109
제 7조 교회 개척.....	110
제 8조 이사회.....	110
부칙	110
행정 및 실행위원회 내규	111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헌법(Constitution)

헌법적 선언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믿는다.

1.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과
2.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3.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신자들의 몸을 세우는 것과
4. 온 세상을 위하여 그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그 지체를 이루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지체의 구성원들은 예배와 교제와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과 목회 사역 그리고 신약 교회의 질서를 위해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일 것이 요구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도적 초대 교회들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안수하고 파송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대표적인 지체로서 펠로우십으로 함께 모였고, 성령의 감독 아래 교회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웠다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성회의 최우선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믿는다.

1. 세계를 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과
2.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과
3.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과
4.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세례를 받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신약의 사도적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바,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표적들이 나타남으로써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적 관계를 갖게하여 신자들이 성령의 열매와 은사 및 사역이 나타나는 충만한 역사를 따라 신약 시대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덕을 복돋울 수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미국 하나님의 성회 한국 총회 산하에서 고귀한 오순절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믿는다.

우리의 목적은 개 교회 회중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개 교회의 특권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며, 예배와 교제 그리고 봉사와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경적인 방법과 질서를 승인하고 증진시킴과 함께 비성경적인 교리와 행위를 배격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엡 4:1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함에 있음을 선언한다.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The Assemblies of God Korean District Council)”라 칭한다. 본 조 이후 기술되는 “한국총회(Korean District Council)”는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를 뜻하며, “본부총회(The General Council)”는 미합중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소재한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회(The General Council of the Assemblies of God)”를 뜻한다.

제 2 조 범위

한국총회는 미합중국 영토 및 한국어를 사용하는 해외의 한국총회 교역자 회원과 회원 교회 및 이들의 사역을 관할한다. 한국총회의 관할권은 업무 수행의 효율을 위해 설립된 각 지방회에도 동일하게 미친다.

제 3 조 본질

한국총회는 본부총회의 헌법 및 조례에 의거하여 가입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상호 약정에 따라 설립된 협력 단체이다.

제 4 조 직무와 특권

한국총회의 직무와 그에 수반되는 특권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복음화를 격려하고 증진한다.
2. 하나님을 예배함을 권장하고 증진한다.
3. 신자들의 건덕(健德)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4. 고귀하고 동일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간의 교제 기초를 마

련한다.

5. 구체 사역으로 인간의 필요에 부응한다.
6. 한국총회 회원 교역자 및 교회들의 제반 활동을 감독한다 (본부 총회 헌법 제10조).
7. 복음 전파와 오순절운동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각종의 기관과 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8. 한국총회 소속 교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지망자를 심사하고 성경의 기준(딤후 3:1-7; 딤후 1:5-9)과 본부총회 헌법(제10조 제4항)과 조례(제7조 제2, 3, 4, 5항)에 규정된 제반 자격을 갖춘 자들을 전도사 및 평신도 시역자로 임명하고 향후 목사가 될 수 있게 인도한다. 타 교단에서 전입한 교역자에게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9. 교회들을 설립하고 지원한다.
10. 성경적 가르침과 훈련 방법 등을 승인하고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훈련 방법 등을 배격한다. 한국총회가 배격하는 비성경적인 교리와 훈련 방법에 대하여는 본부총회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11. 한국총회는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소유, 보관, 사용, 매도, 양도, 저당, 대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 5 조 원칙

한국총회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대로 가능한 한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며, 그 몸으로서 한국총회가 가지는 일치, 협동과 평등의 고유한 원칙을 인정한다. 이같은 원칙은 헌법적 선언에서 밝힌 한국총회의 최우선 존재 이유를 충족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제 6 조 믿음의 교의

한국총회는 다음과 같이 “근본진리에 대한 선언”을 채택한다.

[근본 진리에 대한 선언]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실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교훈이다. 따라서 이 근본 진리에 대한 선언은 우리의 모임을 위한 교제의 근거로써 채택된 것이다(예: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고전 1:10; 행 2:42). 이 근본 진리에 대한 선언에 채택된 말들은 영감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선언된 진리가 온전한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것은 모든 성경적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 교리를 구성하는 것임을 밝힌다.

1. 영감으로 된 성경

신,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축자적으로 영감된 책이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정확 무오하며, 믿음과 그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이다(딤후 3:15-17; 살전 2:13; 벨후 1:21).

2.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영원한 자존자, 천지만물의 창조주, 인류의 구속자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의 관계와 그 연합을 통하여 자신을 구체화시켜 계시하셨다(신 6:4; 사 43:10-11; 눅 3:22; 마 28:19).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1) 정의된 용어

“삼위일체(trinity)”나 “위격(persons)”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와 관련된 용어들은 성경에서 발견되지는 않지만 성경과 조화되는 것으로서 많은 다신교의 신이나 주와는 구별되는 용어이다. 이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기독론)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혹은 삼위 안에 한 본체로서의 한 주님이신 주 우리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다(마 28:19; 고후 13:13; 요 14:16-17).

2) 하나님의 구분과 그 관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위격의 구분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관계를 표현하셨다. 그러나 그 구분과 관계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양태와 마찬가지로 불가사의하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눅 1:35; 고전 1:24; 마 11:25-27; 28:19; 고후 13:14; 요일 1:3-4).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로서의 일치

따라서 성자 안에서 그를 구성하고 있는 분도 성령이지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한 분이시요, 성자는 독생자이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가 일체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주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이름도 하나이다(요 1:18, 15:26, 17:11, 21, 스후 14:9).

4) 하나님 안에서의 주체성 및 협동

성부, 성자, 성령은 위(person)로서 결코 동일할 수 없으며 그 관계에 있어서 혼동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에 관해서는 분할될 수 없고 협력 면에서 상충되지 않는다. 즉 관계성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 안에 있고 성부 또한 성자 안에 있다. 또 교제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와 함께 있고 성부는 성자와 함께 있다. 성부는 성자로부터 오지 않았으나 성자는 권위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왔다. 성령의 본질과 협동 및 권위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의 각 위는 다른 위들과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일할 수도 없다(요 5:17-30; 32, 37; 8:17-18).

5)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고유명사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한 차례도 성부나 성령을 칭할 때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속한 것이다(롬 1:1-3; 요이 1:3).

6)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영원한 신적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그 인성에 있어서도 진정한 인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인정된다. 그가 하나님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임마누엘(Immanuel)”이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마 1:23; 요일 4:2, 10, 14; 계 1:13,17).

7)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하나님과 인간을 다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

은 신성을 나타내고, 인자라는 명칭은 인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영원의 질서에 속하며 인자라는 명칭은 시간의 질서에 속한다(마 1:21-23; 요이 3; 요일 3:8; 히 1:1-13; 7:3)

8) 기독교론의 위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오직 성육신의 사실에서만 유래되었다거나 혹은 그의 구속의 경륜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가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아버지이며 성자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 안에 있는 구분과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부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요이 9; 요 1:1, 2, 14, 18, 29, 49; 요일 2:22-23, 4:1-5; 히 12:2).

9) 주(主)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昇歸)

우리의 죄를 자신이 담당함으로써 깨끗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속하여 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는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만유가 되시도록 성자가 성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때인 종말까지 계속된다(히 1:3; 벰전 3:22; 행 2:32-36; 롬 14:11; 고전 15:24-28).

10) 성부와 성자에게 돌려지는 동등한 영광

성부께서 모든 심판을 성자에게 맡기셨으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모든 속성들을 성자에게로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칭호와 명칭에 담겨져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두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다(단, 관계를 표현하는 것들은 예외로 한다. 2), 3), 4)항을 참조하라). 따라서 우리는 성부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자께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요 5:22-23; 벤전 1:8; 계 4:8-11; 5:6-14; 7:9-10, 빌 2:8-9).

3. 주 예수그리스도의 신성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 1) 동정녀 탄생(마 1:23; 눅 1:31,35)
- 2) 무죄한 삶(히 7:26; 벤전 2:22)
- 3) 기적들(행 2:22, 10:38)
- 4)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역사(고전 15:3; 고후 5:21)
- 5) 죽음에서의 육체적 부활(마 28:6; 눅 24:39; 고전 15:4)
- 6) 하나님 우편으로의 승귀(행 1:9, 11; 2:33; 빌 2:9-11; 히 1:3)

4. 인간의 타락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래 선하고 의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사람은 임의로 지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로 인하여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한다(창 1:26-27; 2:17; 3:6; 롬 5:12-19).

5. 인간의 구원

구속에 대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1) 구원의 조건들

구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인간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눅 24:47; 요 3:3; 롬 10:13-15; 엡 2:8; 딤후 2:11; 3:5-7)

2) 구원의 증거

구원의 내적인 증거는 성령이 직접 증거하고(롬8:16), 모든 사람에게 외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의롭고 참다운 성결의 생활이다(엡 4:24; 딤후 2:12).

6. 교회의 성례

1) 물세례

물세례는 성경에 분부되어 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 물세례를 받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다(마 28:19; 막 16:16; 행 10:47-48, 롬 6:4).

2) 성찬

떡과 포도나무 열매의 요소로 구성된 주의 만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나누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이고(벧후

1:4),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며, 그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신자들이 행할 성례이다(고전 11:26).

7. 성령 세례

모든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간절히 대망하고 이를 위하여 열심히 간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초대 교회 모두가 보편적으로 체험했던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 삶과 봉사를 위한 능력이 입혀지고, 은사가 주어지며, 이는 사역에 사용되어진다(눅 24:49; 행 1:4-8; 고전 12:1-31). 이러한 체험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구분되는 후속적인 체험이다(행 8:12-17; 10:44-46; 11:14-16; 15:7-9).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이 넘치는 충만한 체험이 따라오고(요 7:37-39; 행 4:8),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행 2:43; 히 12:28)와 뜨거운 헌신 및 사역에 대한 헌신(행 2:42),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잃어버린 심령들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랑이 생긴다(막 16:20).

8. 성령 세례의 최초의 외적 증거

신자의 성령 세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최초의 외형적 표적으로 증거 된다(행 2:4). 이 경우에 방언을 말함은 본질상 방언의 은사와 같으나(고전 12:4-10, 28), 그 목적과 사용에 있어서는 다르다.

9. 성화

성화는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위이다(롬 12:1-2; 살전 5:23; 히 13:12). 성경은 “성결한 삶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히 12:14)고 가르치고 있다. 성령의 능력

에 의해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라” (벧전 1:15-16)는 명령을 준행할 수 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실을 매일 같이 인정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모든 재능을 계속적으로 드림으로써 신자 안에서 실현된다(롬 6:1-11, 13:8:1-2,13; 갈 2:20; 빌 2:12-13; 벧전 1:5).

10. 교회와 그 사명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라는 신적 위임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신자는 총회와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이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엡 1:22-23; 2:22; 히 12:23).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아들의 형상을 따른 신자의 몸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성회의 최우선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세계를 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다(행 1:8; 마 28:19,20; 막 16:15-16).
- 2)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고전 12:13)
- 3)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엡 4:11-16; 고전 12:28; 14:12).
- 4)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시 112:9; 갈 2:10; 6:10; 약 1:27).

특별히 하나님의성회는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계속 가르치고 격려하는 신약의 사도적 모범에 따라 위와 같은 존재 이유

를 강조하기 위해 존속한다.

이러한 성령 세례의 체험은

- 1) 초자연적 표적들이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막 16:15-20; 행 4:29-31; 히 2:3-4),
- 2) 하나님과 참된 예배의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더해주며(고전 2:10-16; 고전 12-14),
- 3)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의 덕을 세웠던 것과 같이 열매와 은사와 사역으로 대변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성도들이 따를 수 있게 하는 것과 세상의 궁핍과 필요를 돌아보게 한다(갈 5:22-26; 6:10; 마 22:37-40; 고전 12:28; 14:12; 엡 4:11-12; 골 1:29).

11. 사역

교회가 참여해야 하는 우리 주가 명하고 제정하신 사역은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가진다.

- 1) 세계 복음화(막 16:15-20)
- 2) 하나님을 예배함(요 4:23-24)
- 3)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 가는 성도들의 몸을 세움(엡 4:11,16)
- 4)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움(시 112:9; 갈 2:10; 6:10; 약 1:27)

12. 신유

신유는 복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대속 안에서 예비 되었고, 그것은 모든 신자의 특권이다(사 53:4-5; 마 8:16-17; 약 5:14-16).

13. 복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던 자들이 부활하며 그들이 주의 재림 시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승천하는 것은 교회에 임박한 복된 소망이다(살전 4:16-17; 롬 8:23; 딤후 2:13; 고전 15:51-52).

14.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의 휴거를 포함하는 우리의 복된 소망이며, 그리스도께서 천년동안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가시적으로 오실 때 이루어 진다(슥 14:5; 마 24:27, 30; 계 1:7; 19:11-14; 20:1-6). 천년 통치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구원과(겔 37:21-22; 슥 3:19-20; 롬 11:26-27) 우주적 평화의 확립을 가져온다(사 11:6-9; 시 72:3-8; 미 4:3-4).

15. 마지막 심판

죽었던 사악한 자가 부활하여 그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이 끓는 못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마 25:46; 막 9:43-48; 계 19:20; 20:11-15; 21:8).

16.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보도다”(벧후 3:13; 계 21:22:).

제 7 조 상호관계

제 1 항 하나님의성회 본부총회 및 다른 지역 총회와의 관계

한국총회는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종교 단체인 미국 하나님의성회 본부총회를 구성하는 단체로서 본부 총회의 헌법과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 총회들과 협력 관계를 갖는다.

제 2 항 한국총회와 각 지방회와의 관계

한국총회는 각 지방회 및 지방회 소속 임원들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 3 항 한국총회와 회원 교회와의 관계

한국총회는 회원 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하며, 회원 교회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각 회원 교회는 교리상의 문제를 포함한 불법적 치리와 절차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한국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한국 총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각 회원 교회는 한국총회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제반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회원

제 1 항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회원

하나님의성회 한국 총회는 한국총회에 소속된 회원 교역자와 한국 총회 가입 교회의 모든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 2 항 특별 회원

본부총회 가입 준비 중에 있는 교역자나 미국 외 지역의 회원으로 해당 지역 하나님의성회 총회 회원권을 소유한 목사와 전도사는 한국총회 특별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한국총회 실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사무 총회의 회원이 되어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제 3 항 한국총회 사무총회의 회원

본부총회가 발행한 유효한 자격증서를 소지한 목사와 전도사 및 평신도 사역자는 한국총회 사무 총회의 회원으로서 사무 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본부총회가 발행한 가입 증서를 소지한 교회가 파송한 1인의 총대는 사무 총회의 회원이 되어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제 9 조 회의

제 1 항 사무총회

1.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개최되고 시간과 장소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회원 1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다.

3. 임시총회 발의권

임시총회를 소집할 안건에 대한 발의권은 한국총회에 속한 모든

회원에게 허용되며, 임시총회를 소집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기술한 이유서를 회원 15인 이상의 서명을 첨부하여 실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항 지방회 정기총회

1. 지방회 정기총회

지방회 정기총회는 한국총회의 사무 총회 개회 전에 소집되어 방회 회장 및 기타 임원을 선출하고, 지방회 업무를 처리한다.

2. 지방회 임시 총회 및 임시 총회의 발의

지방회 임시 총회는 7명 이상 회원 교역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지방회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되며, 임시 총회의 발의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정당한 이유서와 함께 7명 이상의 서명을 첨부하여 지방회 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 항 투표권

한국총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의 투표권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본부총회가 발행한 유효한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 한국총회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자.
2. 한국총회에 가입한 교회가 회의에 파송하기 위하여 등록한 총대 1인으로 회의에 출석한 자.

제 4 항 의사 결정

한국총회의 모든 회의의 의사 결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임원

제 1 항 행정 위원

한국총회의 행정 위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 2 항 실행 위원

1. 한국총회 실행 위원은 행정 위원과 지방회장으로 구성한다.
2. 한국총회 실행위원회는 한국총회의 이사회가 된다(본부 총회 조례 제9조 제2항 b 참조).

제 3 항 하나님의성회 총대

한국총회는 하나님의성회 총대 회의에 총회장을 포함한 3인의 총대를 파송한다. 총회장 외 2인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은 반드시 한국총회 소속 교회에서 목회하는 담임목사이여야 한다. 하나님의성회 총대 회의는 본부총회 헌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하나님의성회의 비회기 동안 하나님의성회의 공적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를 뜻한다.

제11조 개교회

제 1 항 본부총회 가입 교회

본부총회 가입 교회는 본부총회에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증서를 취득한 교회를 뜻하는 바, 본부총회에 가입한 교회는 한국총회의 회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성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은 한국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 본부총회 가입 요건

본부총회에 가입을 원하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하나님의성회의 믿음의 교의를 받아들인다.
- 2) 한국총회 또는 개교회가 정한 교회 회원 자격 규정을 채택한다.
- 3) 개교회의 성경적 질서 유지를 책임질 최소한 20인 이상의 공동 의회 투표권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 4) 개교회를 독재적으로 지배하려는 담임 목사나 교회 행정 조직의 직, 간접적인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순종적이며 투명성이 있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교회용 내규를 채택하고, 한국총회가 인정하는 교회 행정 조직을 가진다. 이같은 헌법, 조례 및 정관을 망라한 교회용 내규는 한국총회가 추천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개교회에 의해 채택된 교회용 내규는 시행되기 전에 한국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시행되며, 한국총회는 개교회의 교회용 내규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의 수정, 보완을 개교회에 요청하고, 개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개교회의 교회용 내규에는 회원이 임원에 선출될 수 있는 영적 자격을 규정하여야 한다.
- 6) 본부총회와 한국총회의 자격증을 소지한 담임 교역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2. 본부총회 및 한국총회에 대한 지원 관계

본부총회 가입 교회는 본부총회와 한국총회의 제반 사역과 프로그램에 협조하며, 본부총회와 한국총회의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3. 개교회의 자치권

- 1) 본부총회에 가입한 개교회는 교회의 머리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담임 목사를 선택하여 청빙할 권리, 임원 선출의 권리, 지역 교회로서의 존속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교회의 의무를 다 한 교회는 한국총회 및 본부총회에 1인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 2) 본부총회에 가입한 개교회는 개교회의 헌법과 조례 및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개교회의 회원에 대하여 권징할 권리를 가진다.
- 3) 본부총회에 가입한 개교회는 법인 자체의 명의 또는 이사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수 있다.
- 4) 개교회의 본부총회 가입은 위에서 열거한 개교회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개교회의 주권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 5) 개교회가 채택한 교회 행정 조직 형태는 본부총회 헌법 (제 11조 제1항 a, (4))에 부합되어야 한다.

4. 교리와 그 실행에 관한 종속

본부총회에 가입한 개교회는 본부총회나 한국총회가 개교회의 성경적 또는 비성경적인 교리와 그 실행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개교회의 본부 총회 및 한국총회의 가입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5. 중재 요청권

본부총회에 가입한 개교회는 내부의 문제로 중재가 필요한 경우,

본부총회나 한국총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총회는 한국총회 조례에 따라 개교회의 중재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한국총회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부총회에 중재를 요청한다.

6. 상소권

본부총회 가입 교회는 필요한 경우, 한국총회 실행위원회에 권고와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교회가 한국총회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청원 교회는 본부총회 실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본부총회의 결정에 대하여 한국총회 또는 개교회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국총회 또는 개교회는 본부총회 총대 회의에 상소할 수 있다.

제 2 항 한국총회 가입 교회

본부총회의 가입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한국총회에만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회 또는 공동 의회 투표권자가 20인 이하인 교회로서 한국총회가 발행하는 가입 증서를 소지한 교회는 한국총회 가입 교회가 된다. 한국총회 가입 교회는 한국총회 회원 교회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 항 지교회

개교회가 지교회를 세울 경우, 지교회는 모교회의 헌법과 조례를 준수하고 독립할 때까지 모교회의 감독을 받는다. 지교회가 모교회와 다른 지방회의 관할 구역 내에 세워진 경우, 모교회의 감독 하에 당해 지방회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12조 해산

한국총회가 본 헌법에 규정된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국총회는 해산되고,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및 기타 자산은 한국총회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데 충당되며, 채무 변제 후 잉여분은 본부총회에 귀속된다. 한국총회 이사회(한국총회 헌법 제10조 제2항 제2목)는 한국총회의 채무 변제 후의 잉여 자산 전부를 해산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부총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단, 본부총회가 잉여자산을 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총회의 본부 사무실이 소재한 카운티 법원이 이를 처분하고, 그 재원은 하나님의 성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종교단체에 기부된다.

제13조 개정(改定)

제 1 항 개정안 발의

본 헌법의 개정은 원하는 자가 한국총회 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첨부한 개정안을 사무 총회 개회 90일 이전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우편물로 헌법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 발의된다. 전자우편(E-mail)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총회 개회 90일 이전까지 헌법위원장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발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항 개정 절차

본 헌법의 개정은 한국총회의 사무총회에서 결의된다. 이를 위하여 헌법위원장은 발의된 개정안을 실행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총무로 하여금 사무총회 개회 40일 이전까지 한국총회의 전 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달케 한다. 개정안 채택은 사무총회에 출석한 회원 유효투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헌법 개정안의 채택이 가결된 경우, 한국총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3 항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는 그 수정을 원하는 자가 한국총회 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첨부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사무총회 개회 20일 이전까지 헌법위원장에 제출함으로 발의되며, 그 절차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항 준용 규정

본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총회의 헌법과 조례 그리고 한국총회의 헌법과 조례 순으로 준용한다.

제 5 항 효력

본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 1 조 경과 규정

본 헌법 시행 당시 임기 만료되는 모든 선출직 임원은 본 헌법에 따라 선출된다.

제 2 조 이월된 의사 결정

본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국총회 사무총회에 이월되어 계류 중인 사안은 본 헌법과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폐기되지 않고 결의될 수 있다.

조례 (Bylaw)

제 1 조 총칙

제 1 항 회의법

한국총회의 회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의 정신에 일치해야 하고 로버트회의법 최신판의 회의운영 절차에 따른다.

제 2 항 회순

한국총회의 정기총회 회순은 다음과 같다.

1. 예배
2. 총회장 보고
3. 부총회장 보고
4. 총무 보고
5. 감사보고 및 회계보고
6. 지방회장 보고
7. 각 위원회 및 기관 보고
8. 헌법 개정
9. 임원 선출
10. 미결 사업
11. 신규 사업
12. 폐회

제 3 항 방문자의 발언

타 지역총회 또는 타 기관에서 방문한 교역자 또는 내빈에게는 한국 총회의 결정이나 의장의 재량 하에 발언이 허락될 수 있다.

제 4 항 안건

한국총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안자와 7명 이상의 동의자가 서명하여 총회 90일 전에 실행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임원 선출

제 1 항 선거인단 구성

선거인단은 한국총회의 회원 및 개교회 총대로 구성된다. 개교회의 의무를 다한 교회는 1명의 총대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제 2 항 회의 정족수

총회의 회의 정족수는 정기총회 혹은 임시총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한다.

제 3 항 행정위원

1. 조직

행정위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로 한다.

2. 자격

한국총회의 행정위원은 규정된 선출 방식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그들은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무흠하고 성숙한 경험과 능력이 있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총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한국총회에서 10년 이상 담임목사로 시무한 한국총회의 헌법을 무흠히 준수한 자라야 한다.

3. 임기

행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일자 변경에 따라 조정된다. 모든 임기의 시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출과 함께 시작되며, 전임 행정위원은 업무 인계를 총회 폐회 후 4주 내에 완결해야 한다.

4. 선출방법 및 정족수

- 1)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3분의 2 이상 득표로써 당선 이 확정된다. 단, 3차에 걸친 투표에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2)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는 한국총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시에 선출한다.

제 4 항 지방회장

1. 각 지방회장은 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승인한다.
2. 지방회 정기총회 시 선출방법은 행정위원의 선출방법과 동일하다.
3. 지방회장의 자격은 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무흠하고 성숙한 경험과 능력이 있으며 지방회의 목사로서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총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소속 지방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담임목사로 한국총회의 헌법을 무흠히 준수한 자라야 한다.

4. 지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항 본부총회 총대

1. 한국총회는 본부총회 비회기 동안 공식 정책기구인 본부총회 총대 회의에 한국총회를 대표하는 3인의 총대를 파송한다. 그들은 생활과 사역에 무흠하고 성숙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되 한국총회 총회장은 자동적으로 총대가 된다. 선출 방법은 한국총회 행정위원 선출과 동일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한국총회 헌법 제 10조 제 3항).

2. 추가 공천

한국총회는 40세 이하 목사 1인과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여성 목사 1인을 추가로 총대 후보자로 선출하여 본부총대 회의에 파송하며, 본부총회에서 정한 일정과 선출 방법에 따라 1년 임기의 총대로 활동한다.(본부총회 조례 제2조 제2항 D. (10) a 참조)

제 6 항 본부총회 비상임 실행위원 후보자

1. 한국총회는 본부총회 비상임 실행위원으로 2인의 후보자를 선출하되, 한국총회 행정위원이 아니어야 한다. 선출방법은 본부총회 총대와 동일하다.(한국총회 헌법 제 10조 제 3항)

2. 추가 공천

한국총회는 40세 이하 목사 1인과 반드시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여성 목사 1인을 추가로 비상임 실행위원 후보자로 선출하여 본부총회에 추천하고, 본부총회에서 정한 일정과 선출 방법에 따라 선출되며 4년 임기의 비상임 실행위원으로 활동한다(본부총회 조

례 제2조 제2항 C. (2) c.).

제 7 항 보궐

1. 한국총회 실행위원

본인의 사임 또는 제명, 사망 혹은 결격으로 인하여 궐위가 생긴 경우에는 차기총회 개최 시까지 한국총회 실행위원회가 그 직임을 수행할 자를 임명한다.

2. 본부총회 총대

본부총회 총대가 타 지역 총회로 이전하거나 기타 궐위가 생긴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그 직임을 정식으로 보선할 때까지 한국총회 실행위원회가 그 직임을 수행할 자를 임명한다.

제 3 조 임원의 직무

제 1 항 총회장

1. 한국총회의 장으로서 총회의 비회기 중 한국총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 및 실행위원회와 기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자격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목사, 전도사 및 평신도 사역자의 모든 자격을 심의하여 본부자격심의회에 추천한다.
4.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가 되며 모든 공적 문서 및 법적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다.
5. 한국총회의 모든 업무를 감독하며 자격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권징을 주재한다.
6. 자동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7. 대표 임원으로서 일반적으로 관례적인 기타 업무 및 한국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항 부총회장

1. 총회장을 보좌하며 법인의 부대표의 자격을 가진다.
2. 총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항 총무

1.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2. 한국총회 철인을 보관한다.
3.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총회 산하 목사, 전도사, 평신도 사역자 및 교회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총회장의 감독 하에 공문서 및 법적 문서에 서명 권한을 가진다.
5. 실행위원회의 서기로서 토의 사항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6. 한국총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7. 한국총회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장부를 보관하며 한국총회 및 실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되 회계장부는 매년 감사를 받는다.
8. 기타 한국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항 행정위원회

1. 실행위원회의 비회기 시에 발생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고 차기 실행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 상회의 중재가 필요할 경우 한국총회를 대표하여 조사하고 중재할 수 있는 조정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5 항 실행위원회

1. 실행위원회는 자격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며, 목사, 전도사 및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본부총회에 추천한다.
2. 한국총회 조례 제 8조에 규정된 원칙에 의하여 요청된 권징을 주재할 권한이 있다.
3. 한국총회 비회기 중 본 총회를 대리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4. 각 지방회의 지역 구분을 결정한다.

제 6 항 본부총회 총대

한국총회를 대표하는 3인의 하나님의성회 총대는 본부총회 헌법 제 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위원회 및 기관

제 1 항 상임위원회

1. 한국총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장은 실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장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각 상임위원장이 7명 내외로 임명한다.
2.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장이 상임위원회회의를 소집한다.
3. 상임위원장의 궐위 시는 잔여임기를 담당할 위원장을 총회장이 임명한다.
4. 각 상임위원회는 자체 내규에 의하여 운영하되 해당 내규는 한국총회 헌법에 종속된다.
5.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선교위원회

교회 개척에 대한 제반 업무 지원 및 미자립교회를 돕는 기구로서 모든 정책과 계획을 관장한다.

2) 해외선교위원회

해외 선교 및 선교사에 대한 제반 업무 및 해외 재산권과 선교 사업 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인준을 관장한다.

3) 헌법위원회

헌법 개정안을 심의 및 현의하고, 필요 시 헌법 유권해석 권한을 갖는다.

4) 고시위원회

교단 내의 각종 고시를 주관한다.

5) 교육위원회

목회자와 교회 교육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6) 복지위원회

교역자들의 은퇴연금 및 복지업무를 관장한다.

7) 차세대위원회

차세대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양육하고, 차세대를 위한 교회를 설립한다.

8) 이중문화위원회

이중문화권 교회(회중의 1/2 이상이 이중문화권인 경우)가 부흥성장토록 돕는 업무를 관장한다.

9) 교회성장위원회

총회 교역자들에게 다양한 훈련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총회 소속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2 항 특별위원회

총회장은 실행위원회의 협조로 본 총회 회기 4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명단을 발표하여야 한다.

1. 총회 준비 및 진행위원회
2. 프로그램위원회

제 3 항 총회신학교

한국총회가 인준한 총회신학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총회신학교의 이사장과 지역 학장은 본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총회신학교의 운영은 이사회의 정관에 따른다.
3. 총회신학교 법인의 해산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항 여성교역자회

1. 한국총회와 총회 산하 교회들의 부흥 발전과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증보기도 사역을 한다.
2. 한국총회 여성교역자들의 상호 협력과 여성 교역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힘쓴다.

제 5 조 지방회

제 1 항 목적

각 지방회는 한국총회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총회가 결정한 모든 교단 업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회 소속 교역자와 교회간의 친교를 증진하며, 해당 지방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 2 항 조직 및 업무

1. 지방회장

각 지방회 회장은 지방회 내의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부회장

지방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한국총회 또는 실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지방회장을 선출 또는 임명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총무는 지방회 내의 목사 및 교회의 최근의 명세,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방회 임원회가 요청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4. 회계

지방회장의 감독 하에 지방회 내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담당하며 장부를 보관한다.

5. 내지선교부장

내지선교부장은 그 지역 내의 선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지방회 임원회

- 1) 지방회 임원회는 지방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내지선교부장으로 구성하며 지방회 내의 활동을 독려한다.
- 2) 지방회 소속 교역자의 진출입은 해당 지방회에 허락을 받고 행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3) 장로와 안수집사를 시취하고 안수한다. 장로의 징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항 선거

지방회 임원의 선거는 지방회 총회에서 한다.

1. 선거인단은 해당 지방회 회원으로 한다.
2. 회의 정족수는 지방회 총회에 등록한 회원으로 한다.
3. 지방회장은 3분의 2 찬성으로 선출한다(한국총회 헌법 제 2장 제 2조 4항 참조).
4. 부회장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총무는 새로 선출된 지방회장이 추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6. 내지선교부장과 회계는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7. 지방회장을 제외한 지방회임원은 한국총회 소속 3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한다.
8.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충원이 필요할 경우, 회장의 추천과 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동수일 경우 지방회장이 임명한다.

제 4 항 한국총회와의 관계

각 지방회의 결의가 한국총회의 결의와 상반될 경우에는 한국총회의 결의가 우선한다.

제 6 조 개교회

제 1 항 본부총회 가입교회

1. 가입교회 승인 기준

- 1) 최소 신자 수: 공동의회 회원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근본진리에 대한 선언: 하나님의 성회 믿음의 교의를 인정해야 한다.
- 3) 교회 정회원의 기준: 한국총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회가 정하는 성경적 기준을 따르는 교회여야 한다.

4) 제직의 기준

(1)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위한 기준

신약성경은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이 장로, 그리고 집사 등의 교회 직분을 갖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이 모든 교회들에 의해 지켜져야 함을 권고한다(딤후 1:5-9; 딤후전 3:12).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신자들이 자격을 갖추면 다른 기독교적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2) 개교회의 우선권

이러한 권고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개 교회들은 그들 자신들이 세운 기준들의 우선권(하나님의 성회 헌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함)을 견지할 수 있다.

5) 조직 및 승인

(1) 헌법

개교회는 한국총회의 헌법에 따라 설립된다.

(2) 법인체

개교회는 주정부로부터 적법한 비영리 종교법인체를 취득하기 위해 한국총회에 협조 및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6) 회원 자격증서

한국총회의 결정 통고를 받는 대로 본부총회 총무는 즉시 본부총회의 승인을 받아 교회 회원 자격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자격증서는 액자에 넣을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외양을 갖추어야 한다.

2. 권리와 특권

1) 자치권

이는 교회의 머리되신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리로서 교역자를 선택하여 청빙할 권한, 제직을 선출할 권한 및 개교회로서 존속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포함된다.

2) 목회 요청권

이는 담임 교역자의 궐위가 생겼을 때 지방회에 보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기타 인준된 사역의 혜택을 받을 권리이다.

3) 권징권

이는 성경 및 헌법에 의거하여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재산권

회원교회의 재산권은 전적으로 개교회에 있다. 이는 개교회가 자치 기구로서 이사나 법인의 명의로 재산권을 취득 보전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개교회 재정

(1) 개교회 재정은 십일조와 선교헌금 및 기타 헌금으로 충당한다.

(2) 관리

가) 재무와 회계가 예산 결의에 따라 집행을 하되 지출은 반드시 담임교역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나) 수입은 반드시 회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은행에 적립한다.

다)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무와 회계가 공동 책임을 진다.

6) 상 소

(1) 한국총회 실행위원회에게

이는 담임 교역자,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가 상담 또는 권면이 필요할 경우 한국총회 실행위원회에 도움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에게

이는 교회가 한국총회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본부총회 실행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본부총회 총대회의에게

이는 개교회나 한국총회 실행위원회가 본부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부총회 총대회의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이다.

7) 총대권

개교회의 의무를 다한 교회는 1명의 대표를 본부총회 및 한국총회의 총회에 파견할 수 있다.

3. 의무

1) 권리의 제한

한국총회 가입교회이든, 본부총회 가입교회이든 상기한 바와 같이 자치권이 훼손을 받지 않지만, 교단에 대한 특정의 의무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 하나님의성회의 원칙 및 교리의 준수

개교회의 의무는 하나님의성회가 창설된 기본 원칙을 가능한 대로 지원하고 그것은 “자발적 협력”과 근본진리 선언의 엄수를 포함한다.

3) 성경적 질서와 행위의 유지

개교회는 그들 교회에 성경적 질서의 유지와 성경적인 행위의 기준을 지킬 책임이 있다.

4) 세계선교 및 세계복음사역 지원

개교회는 세계선교 및 세계복음사역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5) 연례보고(Annual Church Ministerial Report)

하나님의성회 모든 교회는 전회원의 최근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규정된 양식에 따라 본부총회 총무와 한국총회 총무에게 보고해야 한다.

6) 비승인 사역자로부터의 교회 보호

- (1) 신뢰할 수 없는 위험한 부흥사나 설교자나 교사가 어떤 추천도 없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교회의 교역자 및 지도자는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소정의 추천서를 받기 전에는 강단에 세우는 것을 금한다.
- (2) 위에 기술한 중요한 문제는 실행위원회의 권면과 상담을 들어야 한다. 목사, 지방회장 및 한국총회 임원은 교회에 들어오려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7) 신자의 교회 이적

- (1) 신자가 다른 교회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적증서를 새 교회로 우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현 교회는 이전 교회에 이적 확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4. 한국총회의 개교회에 대한 중재

1) 중재가 요구되는 경우

교회의 자치권은 하나님의성회의 기본적 원칙이지만, 교회는 한국총회와 본부총회의 중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한국총회 및 본부총회는 교회에 대하여 중재의 책임이 있다. 하기의 경우는 중재를 필요로 한다.

- (1) 재정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불화와 분열
- (2) 담임교역자나 장로회 및 제직회의 독재
- (3) 담임교역자의 지도력의 현저한 결여
- (4) 담임교역자가 장기간 사역할 수 없을 경우
- (5) 하나님의성회의 제 원칙 및 관행으로부터 이탈
- (6) 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이탈 시도

(7) 재산권에 관한 제반 문제

2) 중재 절차

한국총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개 교회 제직회 혹은 회중을 만날 권리가 있고, 혹은 요청을 유예할 수도 있다.

- (1) 목회자의 요청에 의거
- (2) 공식적인 제직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거
- (3) 공동의회 회원 20%의 서명 있는 청원에 의거

3) 한국총회는 중재를 요청한 교회가 소속된 지방회에 중재를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5. 교회의 권징

교회의 인준은 본부총회와 한국총회의 권한으로서 적법한 교단 가입증서의 발행으로 발효되었지만, 상당한 이유로 개교회의 자격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총회는 회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본부총회와 한국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단 가입증서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6. 분리로 인해 파생된 교회

1) 승인 기준

교회내의 단결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되고 교회가 분리되어 새 회중이 형성될 경우 한국총회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성회에 충성된 지지자들이 한국총회에 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윤리적인 원칙 및 한국총회의 교리와 헌법에 입각하여 한국총회는 가능한 한 어느 모임도 하나님의 성회 내에 계속 남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관련 목회자의 권징 기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교역자가 본래 교회나 분열된 무리 안에서 징계를 받을 것인지 혹은 사역 자체가 금해될 것인지를 결정하며, 나아가서는 그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거주 여부까지도 결정한다. 만일 목사의 나쁜 행실이나 태도가 분열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총회는 본부총회 조례 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교회 재산 사유화 불인정

한국총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회 재산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2 항 한국총회 가입 교회

1. 공동의회 회원 20인 미만

한국총회 가입 교회는 공동의회 회원 20인 미만이라는 점 외에는 상기 조항들이 모두 적용된다.

2. 기타 조건

한국총회 가입 교회가 공동의회 회원 20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본부총회 가입 교회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한국총회는 한 교회의 자치 능력 등 다른 요소들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3. 감독의 범위

일반적으로 한국총회는 한국총회 가입 교회의 제직회(필요시에는 이사회)를 대표한다. 그러나 한국총회가 감독하는 범위는 한국총

회 실행위원회가 결정한다.

4. 재산권

공동의회 회원 20인 미만의 한국총회 가입 교회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교회에 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산,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한국총회에 귀속된다.

- 1) 교단을 이탈하거나 교회를 폐쇄할 경우
- 2) 교역자나 교인들 중 어느 누구나 동산, 부동산을 사유화 하려 할 경우

5. 소속 인정서

한국총회는 한국총회 가입교회 자격이 있는 교회에 대하여 가입증서를 발행한다.

6. 본부총회 가입 교회에서 한국총회 가입 교회로 전환

본부총회 가입 교회에 대한 연례보고서 조사 결과 그 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이 20인 미만이 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한국총회 가입 교회로 전환된다. 이 경우에 한국총회는 그 사실을 본부총회 총무와 해당 지방회 및 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교회는 충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룩하여 본부총회, 가입 교회가 될 때까지 한국총회 가입 교회로 남아 있게 된다.

제 3 항 한국총회의 감독을 받는 교회

어떤 이유로든지 행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는 한국총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 회중은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한국총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교역(敎役)

제 1 항 교역의 정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베소서 4:11), 권면 하는 자, 행정하는 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롬 12:7,8)이다. 교역의 성숙도에 따라서 목사, 전도사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의 3종류로 구분된다.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역자는 교회의 성례와 예식(성직자의 기능)을 집행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1. 목사의 정의

- 1)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안수를 받아 세운 성직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중(掌中)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며(계2:1),
- 2)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택정(擇定)하여 세우신 복음의 사신이며(엡 4:11),
- 3)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목자이다.(벤전5:2:2-4)

2. 전도사의 정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성도를 돌보고, 가르치며, 설교하고, 권면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자이다.

3. 평신도 사역자

복음사업의 충실한 보조자로서 특히 목사의 지도하에 그들의 시간의 일부를 기독교 봉사에 헌신하는 자이다.

제 2 항 자격 및 구비 사항

1. 일반적 기본 원칙

- 1) 중생 체험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요3:5).
- 2) 성령세례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행 2:4).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교회의 4대 사명(참조, 근본진리에 대한 성명10. 교회와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3) 본인의 확신과 성령의 역사와 동역자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사역에 대한 소명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4)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외인으로부터의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딤후1:7; 딤후3:7).
- 5) “근본진리에 대한 선언”에 포함된 교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 6) 하나님의성회 총회 및 한국총회의 헌장과 헌법을 연구하여 교단의 원칙을 실천하고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 7) 헌장을 충실히 따르고 협력하며 연장자와 감독자의 권면을 받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교육 조건

한국총회의 자격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9) 신원조회

하나님의성회의 교역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총회 실행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10) 결혼 관계

교역자의 이혼이 증생하기 전에 일어난 경우, 결혼생활에 있어서 전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발생한 경우(마 19:9), 혹은 불신자에 의해 신자가 버림받은 경우(고전 7:10-15)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여 그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본부총회나 한국총회의 교역자 자격증 취득을 허락하지 않는다.

11) 교역자 자격 무효와 파혼

본부총회 실행위원회는 신청자의 교역자 자격 무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경우에 결혼할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기만과 사기에 의한 결혼 혹은 유효한 결혼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명백한 상황에 대해 분명하고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본부총회 실행위원회는 신청자의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가 교단의 성경적 입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 권한은 교역자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 혹은 증생하기 전 이혼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본부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하나님의 성회 총대회의에 상소할 수 있다.

12) 여성의 자격

성경은 말씀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능력 있는 여성도는 교회에 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골 2:29; 행 21:9; 고전 11:5).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있어 진보를 보이고, 그 사역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실제로 봉사에 있어 자격이 증명되었으며 본 총회의 제반 요건을 갖춘 여성은 교회의 사업을 감당함에 어떤 직분도 받을 권한이 있다.(본 총회 헌법 제 2장 제 7조 참조)

13) 타 교단 교역자의 가입

- (1) 타 교단의 교역자가 하나님의성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경우 그 교단의 추천서를 가입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격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자의 이전 교단 교역자 자격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으며 단지 하나님의성회의 기준에 비추어 결정한다.
- (2) 타 교단으로부터 가입하는 교역자는 한국총회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특별회원의 자격을 얻고, 6개월 이내에 교리(헌법 제6조 근본진리에 대한 선언), 오순절 신학, 한국총회 헌법, 하나님의성회 역사 등을 이수하여 본부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상기 과목들은 신학교에서 수강하거나 독학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자격은 신약성경(딤후 3:1-7; 딤후 1:7-9)에 명시되어 있다.

- 1) 신청자는 23세 이상으로 한국총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2) 2년 동안 한국총회의 전도사 자격증서를 소지하고 계속하여 교회 혹은 기관에서 사역한 자로서 아래의 세 가지 경우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1) 전도사로서 한국총회 신학대학원이나 본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 (2) 한국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의 학사(B.A.)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총회 소속 신학대학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3) 교회를 개척하여 한국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담임교역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한국총회 회원으로 관할 지역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자격심의 위원회의 면접을 필해야 한다.

4) 거주 요건의 예외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한국총회 자격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인 여건이 인정되는 경우, 2년 이상 전도사 자격을 소지해야 하거나 신청자가 적어도 1년 이상 한국총회에 거주한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철회할 수 있다. (한국총회 조례 제 2장 제 7조 3항 3, 4 참조)

5) 현역 목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15회 이상 설교하여야 한다.

3. 전도사

전도사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1) 설교 사역

(1) 복음전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소명의 확실한 증거가 있고 설교에 실제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들은 질병이나 허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5회 이상 설교하여야 한다.

(2) 한국총회가 요구하는 응시자격에 합당한 자에게 전도사 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3)

가) 일반대학 학사(B.A.)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총회 신학대학에서 30학점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자격 소지자로서 한국총회 신학대학에서 90학점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2) 특수 사역

기독교교육, 청소년 활동, 음악 혹은 기타의 전임 사역 등의 특수 사역에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로 영적 자격은 설교 사역의 경우와 동일하다.

3) 전도사의 업무

전도사로서 담임 목회를 할 경우에는 축도를 제외한 각종 예식들을 집례할 수 있다.

4. 평신도 사역자(Christian Workers)

- 1) 시간의 일부를 그리스도의 사업에 헌신한 복음사업의 충실한 보조자로서 담임목사 혹은 지정한 감독자 아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질병이나 허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2회 이상 설교하여야 한다.
- 2) 평신도 사역자가 담임 교역자의 위치에서 사역하게 되는 경우 2년 내에 전도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65세 이상 된 자에게나 조건부로 그 자격 증서가 발행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3) 교역자의 자격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총회가 교회의 사역을 계속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조건부 자격증이 발행될 수 있다. 조건부 자격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2회 이상 갱신할 수 없다. 이 사람은 3년 내에 교역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5. 이중 자격 (Dual Credential)

만일 한국총회 이외 타 기관의 자격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국총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동적으로 담임 목회직도 상실된다. 단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특별회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 항 교역자 승인 절차

한국총회는 교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심의하여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추천한다.

1. 신청

신청서 양식에 기재하고 전형료와 함께 본 총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자는 자발적인 일치, 교제, 협동 그리고 평등의 기본적인 원리에 의거하여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된다.

2. 고시

신청자는 각각 그에 준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

3. 한국총회 자격심의위원회 면접

신청자는 본 총회의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면접을 치러야 한다.

4. 자격심의위원회의 기능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한국총회에 목사, 전도사, 평신도 사역자 후보자를 시취하고, 승인하며 추천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자격의 최종 승인과 자격증서 발행은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가 한다.

5. 자격증서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승인된 후보에게 목사 안수증서, 전도사 자격증서, 특수사역 증서와 평신도 사역자 증서를 매년 발행하는 회원자격증과 함께 발부한다.

6. 목사 안수식

목사 안수식은 한국총회가 주관한다.

7. 본부총회 급행 자격 심사 대상자 승인

본부총회에 올린 급행 자격 심사 대상자는 본부총회의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면접을 치른 후 급행 자격심사 대상자가 된다. 급행 자격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1)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성회에 가입하기 원하는 담임 목사
- 2) 다른 교단에서 자격을 받고 한국총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부 목사
- 3) 하나님의성회에 가입하기 원하는 소수민족 목회자 그룹
- 4) 한국총회에 목사로 임명된 지 10년 이상 된 교역자의 배우자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자

제 4 항 교역자 전·출입

1. 전·출입

교역자가 타 지방회로 전 출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회에 이를 보고한다. 해당 지방회는 전출입 의사를 확인하고 지방회 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행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2. 자유사직

교역자의 사역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해 사직을 결심하고 사직원을 지방회에 제출하면 지방회는 이를 결정한 후 한국총회에 보고한다.

3. 권고사직

교역자가 성직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업적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한국총회 행정위원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4. 교역자의 휴양

사무 교역자가 건강상의 이유나 신학 연구, 기타 사정으로 개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개교회 장로와 협의하고, 2개월 이상 결근하게 될 때에는 지방회의 승낙을 얻으며, 1년이 경과할 때에는 한국총회 행정위원회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제 5 항 자격 갱신 및 복권

1. 용어

1) 갱신(Renewed)

갱신 마감일을 준수한 교역자에게와 태만하였지만 1월 15일까지 갱신한 교역자에게 갱신이란 용어가 적용된다.

2) 복권(Reinstated)

공식적인 교역자 명부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으나 자격 복권 신청을 하여 그 자격이 승인된 교역자에게 복권이란 용어가 적용된다.

2. 만기일

회원자격증은 매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자격 갱신은 교역자 개인의 책임이다.

3. 1월 15일까지의 유예 기간

12월 31일까지 회원자격증의 갱신을 마치지 않는 자는 태만으로 간주하고, 갱신을 위해서는 1월 15일까지 과태료 50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실효된(lapsed) 교역자의 복권

1월 15일까지 갱신치 않은 자는 12월 31일자로 자격이 만료된 것으로 기록된다. 자격의 복권을 위해서는 100불의 수수료와 함께 복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제명된 교역자 이외의 복권

교역자가 제명으로 인하여 갱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 교역자 명부에서 삭제된 때에는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복권 자격이 주어진다. 복권을 하려면 수수료 100불과 함께 복권 신청서를 한국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6. 복권 불허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복권을 불허한다.

- 1) 동성연애자
- 2) 소아성애자
- 3) 근친상간자
- 4) 아동 포르노의 제작, 배포, 소유 또는 사용자

단 소아성애 규칙 위반자의 복권은 하나님의성회 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신중한 평가를 받은 후에 사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이전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교역자가 구제 프로그램을 거치고 복권된 후, 동일한 성적 범죄를 범할 경우 복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6 항 교역자 명부

1. 현역 교역자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교역자 명부를 오직 교단의 편의만을 위해 편찬하여 발행하되 기부금 모금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교역자 명부는 매년 개정되고 해당 연도의 회원자격증이 발급된 현역 교역자들의 이름을 싣는다.

2. 휴직 교역자

현역 교역자로서 목회, 부흥사의 사역 혹은 기타 전임 사역을 중단하려는 자는 한국총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본총회는 본부총회 총무에게 통지하고, 본부총회 총무는 한국총회가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그 명단을 휴직 목사 명부로 이전하여야 한다.

1) 정의

1년 동안 15회 미만의 설교를 한 모든 목사의 명단은 그 다음 연도의 휴직자 명부에 기재된다.

2) 교역자 명부로부터의 삭제

교역자가 2년간 계속하여 비활동 중인 경우 그의 이름은 교역자 명부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한국총회가 서신으로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교역자 명부에 그대로 기재될 수 있다.

3) 예외

노령과 허약으로 휴직 중인 교역자, 하나님의성회 및 한국총회의 기관에서 일하는 교역자, 혹은 교육, 음악, 청소년, 기독교

교육 등의 전임 교역자, 60세 이상 된 교역자 그리고 연령 불문하고 하나님의성회에서 25년 이상 시무한 교역자는 상기 2)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지체 부자유 교역자

질병이나 지체 부자유로 인하여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교역자는 휴직 교역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들의 자격은 변하지 않고 연례 자격 갱신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총회가 승인하는 이러한 지체 부자유 교역자는 총회 재정 지원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3. 휴직 교역자로부터 현역 교역자로의 전환

휴직 교역자가 현역 교역자로 전환한 경우 한국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명단을 현역 교역자 명부에 재등기한다.

제 7 항 특전

1. 교단 내

- 1) 교단 내 사역 및 기타 승인된 사역을 맡을 수 있다.
- 2) 한국총회 및 하나님의성회에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 3)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계하나님의성회 펠로우십(WAGF)을 통하여 사역할 수 있다.
- 4) 승인된 하나님의성회 계통의 간행물을 구독할 수 있다.
- 5) 대학 등 승인된 하나님의성회 계통의 교육기관에 참여할 수 있다.
- 6) 수양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소년부, 주일학교 등 각 부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 7) 단체 보험, 단체 의료보험, MBA 은퇴보험 등의 보험 및 퇴직

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8) 동일한 목적 및 정신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와 친교할 수 있다.

제 8 항 의무 및 준수 사항

1. 건전한 교리의 준수

근본진리에 대한 선언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를 선언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성회 교역자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성회가 배척하는 교리 및 관례는 아래와 같다.

1) 신자의 무조건적 보장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의 영구적 보장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에 의존한다.(요15:6) 거룩한 생활의 유지(벧전 1:16; 히12:14)와 생명록에서 제하여질 수 있다는 것(계 22:19)과 믿는 자가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눅8:13) 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성회는 한번 구원받은 자는 버려질 수 없다는 신자의 무조건적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배척한다.

2) 율법주의

(1) 양심의 문제

하나님의성회는 “먹는 문제”(롬 14:1-3) 같은 양심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자를 배척한다.

(2) 구원에 조건 추가

하나님의성회는 제 칠일 안식일 성수 같은 구원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등 개인적인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자를 배척한다.

3) 종말론적 오류들

(1) 만유의 회복

하나님의성회는 선지자들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가르친 것을 회복의 제한으로 이해하며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보편적 구속론(Universal Redemption Theory)도 반대한다.(막13:32, 33; 눅12:37-40; 살전5:2).

(2) 주의 재림의 날의 확정

주님이 어떤 특정한 날에 재림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막13:32,33; 눅12:37-40; 살전5:2). 강단에서나 출판물로나 주의 재림의 때를 확정하고 숫자나 날짜의 환상을 말하는 것을 항상 배척한다.

(3) 환란 후 휴거설

하나님의성회는 근본진리에 대한 성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의 복된 소망으로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는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성도 간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성회 모든 교역자는 특정한 환란의 사건이 성도의 휴거 이전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어떤 가르침도 배격한다.

(4) 무천년설

하나님의성회는 무천년설과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사건을 부인하는 이론도 배격한다. 우리는 어느 교역자이건 위의 종말론적 오류 중 어떤 것이라도 설교하거나 가르치고 있다면, 그러한 오류를 즉시 중지할 것을 권한다. 만일 그 오류를 계속 고집할 경우, 하나님의성회는 그런 사람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눅

21:34-36; 살전5:9-10; 살후1:4-10; 계3:10, 19-20)

(5) 한국총회가 금하는 이단

2. 명확한 오순절적 증거에 대한 재현

하나님의성회 교역자는 가르침과 행동에 있어서 명확한 오순절적 증거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나타내야 한다.

3. 본부총회와 한국총회의 협력 관계

1) 거주지 지역총회와의 연대

한국총회의 소속 목사, 전도사 및 수습전도사는 거주지 지역총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역에 임해야 한다.

2) 예외

한국총회 이외의 지역총회에 가입된 교회를 목회하는牧사는 그들의 거주지를 불문하고 그 교회가 속한 지역총회에 속하게 된다.

3) 다른 지역총회와의 협조

교역자는 그가 일시적으로 수고하는 다른 지역총회와 협력해야 한다.

4) 타 교단 교회에서의 사역

교역자가 하나님의성회 교리와 적절한 교역자의 행위를 지키는 경우 타 교단 교회에서 오순절 메시지를 설교하는데 방해받거나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혼란과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총회 실행위원회와 협의

해야 한다. 만약 한국총회 실행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런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교역자는 징계를 받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5) 교단에서 제적된 자에 대한 태도

권징 결정이 중요하고 교회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한국총회 회원은 누구든지 제적된 자에 대한 태도가 권징 책임을 맡은 형제들의 결정이 무력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견책을 받고 이를 계속하는 경우 권징을 받게 된다.

6) 모든 교역자들은 교리와 권징(한국총회 헌법 제7조 8항 및 제 8조 참조)의 문제에 있어서 본부총회와 한국총회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세상과 분리되고 무흠한 개인생활

교역자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성경적 행위 기준을 따를 책임이 있다.

1) 세속적인 것의 거절

국가의 도덕 기준이 무섭게 붕괴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는 모든 형태의 세속적인 것에 대해 성경의 기준을 지킬 것을 재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신자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5,16)는 말씀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에서 성경은 다음에 대하여 경고하는 바 그들은 아래와 같다. 즉, 육신을 병들게 하

고 마음과 심령을 썩게 하는 행동에 동참하는 일; 결국 남용케 되는 쾌락, 직위와 소유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과 집착; 극단적인 태도, 적합지 않은 언어의 사용, 부적당한 외모;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약화시키는 유혹과 이에 관련된 것(눅 21:34, 35; 롬 8:5-8, 12:1; 고후 6:14-18; 엡 5:11; 딤후 2:8-10, 4:12; 약 4:4; 요일 2:15-17; 딤후 2:12) 등이다.

2) 개인 재정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처리

교역자는 소득 범위 내에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에 해가 되는 채무를 지는 습관이 없어야 한다.

5. 능력 있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교역에 있어 풍성한 열매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6. 교역자의 윤리와 예절

1) 목회자와 교회에 대하여

모든 예절 없는 행동은 배척되어야 하고, 모든 교역자는 당사자의 승낙 없이 남의 일을 간섭하거나, 지도자의 영향력에 해를 줄 수 있는 서신을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 모든 서신은 개인 앞으로 해서는 안되며 교회의 책임자 앞으로 해야 한다. 목회자가 없는 경우 교회의 임원을 수신인으로 하여 편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교역자는 한국총회 실행위원회 혹은 본부총회 실행위원회에 의하여 위반자로서 성경적인 권징을 받게 된다. 그러한 예절 없는 행동은 연례 자격증 발급에 영향을 미치며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될 수 있다.

2) 개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는 교역자

교역자는 개교회에서 평신도의 직분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비밀이 보장된 상담에 관하여

하나님의성회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활동하는 동안 영적 상담자로서 얻은 정보를 신성하고 비밀된 정보로 존중해야 하며, 상담자의 허락이나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이러한 비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7. 비성경적 교회연합운동

하나님의성회는 한국총회 교회나 교역자가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비성경적 교회연합운동을 증진하기 위한 어떠한 초교파 단체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1) 비밀 결사의에 가담

우리가 전할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세의 메시지이고(마24:14) 타협없이 복음전파 사업에 전심전력으로 헌신하는 것이다(눅 9:62). 그러나 여러 종류의 비밀 결사는 귀중한 시간과 관심을 쏟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종으로서 갈 길을 이탈하게 한다(엡5:16). 그러한 조직의 성격은 비밀(요 18:20; 행 26:26)과 종교적 서약의 강요(마 5:34)와 불신자들이 대부분인 사람들과 명예를 같이 메게 해 아주 강한 결속을 초래한다(고후 6:14).

이런 비밀 결사의 정신 철학 및 일반적 영향은 오직 자연인의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며(고전 2:14; 골 2:8), 이로써 중요한 영적 진리를 잘못 해석하게 할 수가 있다(벧후 3:16). 이러한 비밀 결사를 신뢰하면 선한 행위와 좋은 도덕적 봉사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받아들이게 된다(엡 2:8, 9) 위

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는 비밀 결사를 따라서는 안되며 이러한 비밀 결사를 인정하는 자는 그것을 끊도록 충고한다(고후 6:7). 더욱이 우리 교역자는 성도로 하여금 그러한 결사에서 떠나도록 영향력을 선하게 행사하여야 한다(딤후 4:12; 딤후 2:24-26).

2) 에큐메니칼 운동

하나님의성회는 한국총회 교회나 교역자가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증진하기 위한 어떠한 초교파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한다.

- (1) 우리는 이 운동의 교리적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성경의 영감, 그리스도의 신성, 원죄설, 대속의 이론 및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의 진수로 이해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을 거부하는 자들이 포함된 것을 믿는다.
- (2)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이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의 우선권과 배치되고 자주 개인 구원의 긴급성보다 사회적 관심을 앞세운다고 믿는다.
- (3) 우리는 다양한 종교 조직이 '세계적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는 것은 결국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언급된 종교적 바벨론이라고 믿는다(그러나 이는 하나님의성회 교역자가 초교파적으로 오순절 사역과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8. 설교 회수 요건

- 1) 목사는 년 15회 이상 설교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1년간 휴직명부에 기재된다. 이러한 상태가 2년간 계속되는 경우 목사 명부에서 삭제된다.
- 2) 전도사는 1년에 15회 이상 설교하여야 한다.

3) 평신도 사역자는 1년에 12회 이상 설교하여야 한다.

9. 재정적 의무

1) 본부총회에 대하여

하나님의성회는 국내외 분야에서 협동과 우애 정신을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 실행위원회 및 사무비 지원 등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므로 목사, 전도사, 평신도 교역자는 매달 십일조나 헌금 또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 각각 25불, 20불, 15불씩 헌납할 의무가 있다. 가능한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금액 이상을 상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한국총회에 대하여

- (1) 한국총회에 소속된 교역자는 실행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의무적으로 한국총회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 (2) 한국총회 산하 개교회는 전년도 결산의 1%를 상회비로 한국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책임

- (1) 위의 요건의 준수는 모든 현역 교역자의 자격 갱신의 선결 조건이다. 납부가 지체된 경우 자격 갱신시 미납액을 지불해야 한다.
- (2) 한국총회는 본부총회 회계가 송부한 교역자들의 본부총회 지원금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릴 수 있다.
 - 가) 한국총회 회보를 통해 일괄적으로
 - 나) 편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 다) 한국총회의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 라) 한국총회 실행위원회는 각 교역자의 연례 보고서를 면

밀히 분석하고 각 교회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가 하나님 의성회 및 한국총회 사역에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제 9 항 자격의 이적

1. 이적증서

교역자가 한국총회 이외의 본부총회의 타 지역총회로 이적하는 경우 한국총회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타 지역총회에 60일 이내로 이적증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이적증서는 옮긴 지역총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교역자가 타 지역총회에서 한국총회로 이적해 올 때에는 그 지역총회에서 한국총회로 이적증서를 60일 이내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봉사하기 위해 본부총회로 이적하는 교역자
- 2) 60세가 되고 현역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교역자 그리고 65세가 되고 교회 담임을 하지 않는 교역자
- 3) 군에서 복무 중인 교역자
- 4) 본부총회나 한국총회 소속 학교의 교사로 봉사하거나 하나님 의성회 총회나 한국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단 학교의 교사로 봉사하는 교역자
- 5) 본부총회의 국내외 선교사로 임명되어 휴가나 임시 업무로 미 국내 원소속 지방총회 이외의 다른 지역총회에 거주하는 자
- 6) 한국총회 이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7) 하나님의성회 교단에 속하지 않은 기관에 봉사하는 자
 - (1) 지역총회 경계를 넘어 일반적인 사역 범위를 갖고

- (2) 두 지역총회가 모두 예외에 합의하고
- (3) 그 기관이 두 지역총회에서 받아들여져야 함
- 8) 지역총회를 순회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자
- 9) 한 지역총회 회원이나 우편주소만 다른 지역총회에 있는 교역자

3. 인사 기록부

하나님의성회 타 지역총회로 이적하는 교역자를 돕기 위하여 그와 그 배우자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사기록부가 이적증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 10 항 자격의 종결-비권징

1. 교역자의 자발적 종결

1) 실효(Lapsed)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자격을 갱신하지 못한 교역자는 징계 사유가 없으면 하나님의성회 교역자 명부(Assemblies of God Minister)에서는 실효로 기재된다.

2) 사임(Resigned)

스스로 교단에서 물러날 결심을 한 자로서 징계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한국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총회와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하나님의성회 교역자 회보에는 그 종결이 사임으로 기재된다.

2. 한국총회의 주도에 의한 종결

1) 휴직 (Inactive)

교역자가 2년간 계속하여 휴직일 때, 본부총회 조례 제 7조 6항 b에 따라, 그 이름이 교역자 명부에는 휴직으로 기록된다.

2) 비 갱신 (Not renewed)

한국총회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권징이 끝나지 않은 교역자의 이름은 교역자 회보에는 비 갱신으로 기록된다.

3. 타 교단 가입의 경우

타 교단에 가입한 교역자는 하나님의성회의 회원 자격이 종결된다. 적절한 자격 종결의 범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자격증의 반납

상기의 경우 교역자는 자격증 (안수증서, 전도사 증서, 특수사역 증서, 평신도 사역자 증서)과 최근의 교단 신분증(fellowship card)를 본 총회 사무실로 반납하여야 한다. 한국총회는 이를 본부총회 총무 사무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반납을 거절하는 자는 불순종으로 간주되어 교역자에 대한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교역 자격 변경

교역자의 자격 변경은 한국총회에 즉시 보고 되어야 하며, 한국총회는 이를 교역 자격 변경 서식(Ministerial Status Report)에 기입하여 본부총회 총무 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항 원로교역자

본 교단에서 다년간 봉사한 교역자에 대한 존경과 명예를 표하기 위하여 65세가 된 교역자 자격 소지자에게는, 전임사역의 계속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원로 교역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1. 용어

- 1) 현역 원로교역자란 전임 사역의 4분의 3내지 전부를 봉사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 2) 준 은퇴 원로교역자란 전임 사역의 2분의 1 또는 그 이하를 봉사하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 3) 은퇴 원로교역자란 사역을 하지 않는 교역자를 말한다.

2. 은퇴 신청

- 1) 준 은퇴 원로교역자 및 은퇴 원로교역자 자격은 한국총회에 그 자격을 요청한 교역자에게만 허용된다. 한국총회 총무는 요청을 완료한 교역자의 명단을 본부총회 총무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은퇴하는 경우에는 실행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3. 지침

1) 보고

현역 원로교역자 및 준 은퇴 원로교역자는 연례 보고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그들의 십일조 중에서 본부총회 지분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 은퇴 원로교역자는 우편과 보험을 위한 정확한 주소를 보유하기 위하여 약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입원 (Sources of income)

이러한 명세나 지침은 원로목사의 수입원이 사역, 은퇴보험,

사회보장, 투자, 고용 등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3) 간행물 표식

하나님의성회 공식 간행물에는 현역 원로교역자로서 신분이 구별되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이나 은퇴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부에는 표식을 할 수 있다. 준 은퇴 원로교역자나 은퇴 원로교역자는 하나님의성회 목사 명부에 그 신분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본부총회 지원

현역 원로 교역자 및 준 은퇴 원로 교역자는 본부총회 지원을 위해 지정된 금액을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은퇴 원로 교역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본부총회에 지불해 오던 십일조의 본부총회 지분에 대한 지불 여부를 결정한다.

제 12 항 이혼과 재혼

1. 회원권

1) 회심 전 결혼 불화

신자 중에 과거의 죄악 생활에서 결혼 관계가 복잡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여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이들도 신자로서 받아들이되 그들의 결혼 불화를 주님의 손에 맡길 것을 권고한다(고전7:17, 20, 24).

2) 사실혼(내연관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게서는 회원권을 주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3) 재혼

결혼과 이혼에 관한 느슨한 기준은 개인, 가족 및 그리스도의 대의에도 매우 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과 가르침으로 이혼을 막는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간음한 연고 이외의 이유로 이혼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마19:9).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와, 불신자에 의하여 신자가 이혼당한 경우에 재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신자가 결정할 것을 권한다(고전7:15, 27, 28).

4) 개교회 지도자

(1) 장로와 집사의 직분 기준. 신약성경이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이 장로와 집사의 교회 직분을 갖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이 우리의 모든 교회들에 의해 지켜져야 함을 권고한다(딤후 1:5-9; 딤후전 3:12). 단, 중생하기 이전에 이혼과 재혼한 자들의 경우, 결혼생활에 있어서 전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경우(마 19:9), 혹은 불신자에 의해 신자가 버림받은 경우(고전 7:10-15)는 예외로 한다.

(2) 개교회의 우선권

이러한 권고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개교회는 그들 자신들이 세운 기준들의 우선권(본부총회 헌법 제11조 참조)을 견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결혼 예식과 주례

1) 사역의 지침

본부총회 조례 9조 B, 제5항, b에 규정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하나님의 성회 목회자도 이혼한 자와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자의 결혼 예식을 주례할 수 없다.

2) 양심에 반하는 주례의 거부

본부총회 조례 9조 B, 제5항, b에 규정된 예외적 경우에 포함된 그러한 사람들의 재혼은 목회자의 양심에 반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목회자는 그러한 결혼 예식을 주례하지 않을 수 있다.

3) 동성 결혼 주례

목회자는 어떤 형태의 동성 간의 결혼, 동거, 약혼 예식을 주례할 수 없다. 그러한 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하게 금지된 최악인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다(레 18:22; 20:13; 롬 1:26, 27; 고전 6:9; 딤후 1:9-11). 부지중에 속아서 주례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종류의 인정될 수 없는 관계의 예식을 주례하는 목회자는 총회에서 제명된다.

4) 결혼 상담

하나님의성회 목회자는 결혼 예식 전 기독교적 결혼을 위한 성경적 지침과 함께 결혼 지망자를 상담해야 한다. 사려와 지혜와 신중함이 결여된 후보자의 결혼 예식은 목회자의 판단에 의해 주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 항 청지기 직의 남용

1. 십 일 조

1) 의무

우리는 십일조의 의무를 이행하며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 십일조 헌금에 있어서 교역자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목적

성경에 의하면 십일조는 활동적인 사역의 지원과 주님의 사역과 복음전파에 쓰여져야하며 자선이나 기타 목적에 쓰여져서는 안된다. 목회자가 정상적이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 및 교회는 상호 만족할 만한 배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일조가 반드시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는 배척한다.

2. 기금 모금

기금 모금의 목적은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 교단을 하나님의 성회 원칙과 정책에 맞지 않는 방법을 쓰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1) 승인

교역자나 선교사가 사전에 승인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업과 이 유에서든지 편지나 기타 방법으로 모금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비윤리적인 것이다.

(1) 개교회

교회 사업들을 주관하는 지도자는 개교회나 지역 사회로부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한국총회

한국총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은 본 총회 실행위원회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3) 본부총회

전국적 사업 또는 전국적 기관은 본부총회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우편 명부의 부적절한 사용

행정위원회의 허락 없이 우편 명부를 사용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개 교회 범위를 넘은 연쇄 기도의 명목이든, 연쇄 편지이든, 교회 및 개인적 사업의 지원을 위해 회원에게 호소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3. 종교적 기관의 개인 소유권

한국총회는 합법적인 법인체가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모금한 기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교회건물, 학교, 혹은 기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 창업 혹은 최종 권위가 법인체 전체에 귀속이 안 된 개인 소유권, 개인 법인체, 폐쇄된 법인체, 혹은 어떤 다른 형태의 소유권 등의 수단으로 하나님의성회 교역자가 상기 재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교회가 단독 법인체를 갖지 못했거나 한국총회에 의하여 법인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사회에 귀속된다.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인체를 설립하여 소유권자의 합법적 소유지분을 고려하여 법인체로 이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권면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유권에 관련된 하나님의성회 회원은 하나님의성회 총회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제 14 항 신유와 전문직 의술

하나님의성회 본부총회는 신자를 상담하는 교역자가, 신체적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의술의 도움이나 치료 받음을 제외시키는 것을 배척한다. 하나님의성회 교역자는 의술의 도움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 8 조 권징

제 1 항 권징의 본질과 목적

권징이란 교회가 책임져야 할 성경적 권위의 행사이다.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역의 순수성과 풍성함이 유지되고 권징 받은 자를 회개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권징은 교회의 영적 풍성함을 충분히 보호하게 하는 동시에 교역자의 회복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 그것은 본질상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제 2 항 권징 결정의 원인

본 헌법과 조례에 규정된 하나님의성회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자격심의위원회에서 권징 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권징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로서 온당치 않은 행위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2. 사역의 전반적 무능
3. 오순절적 증거를 정확히 가르치지 못했거나 또는 실수하였을 때
4. 논쟁을 일삼거나 비협조적인 정신
5. 교회에 대한 독재적 행위
6. 한국총회의 권고에 대한 임의적 거절
7. 전해의 공공연한 고의적 변경
8. 채무를 지는 습관으로 비난 받을 때
9.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위반한 결혼
10. 사전 허가 없이 하나님의성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
11. 교단에서 제명된 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12. 행정위원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 총회 회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는 행위

제 3 항 발의

1. 권한

교역자를 안수하고 자격증서를 주도록 추천할 권한을 가진 자격심의위원회는 또한 인준을 철회하거나 자격증서의 회수를 추천할 권한이 있다.

2.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총회의 우선 권한

위반사항이 발생했음을 보고 받은 한국총회 실행위원회는 권징을 발의할 우선권이 있다.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서류로 접수된 하나님의성회 원칙(헌법 제 2장 제8조 2항)을 위반한 교역자에 대한 보고나 불평은 한국총회에 통지되어야 하며, 한국총회는 위반 사실을 조사하여 그 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본 1부는 교역자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총회에 송부해야 한다.

3. 한국총회의 책임

위반 사실이 발생한 한국총회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위반에 대한 증빙서류를 한국총회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4.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의 책임

사건을 송부한 후 90일 내에 한국총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발의할 것인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제 4 항

하나님의교회 원칙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나 불평에 대한 조사

1. 미국 내에서의 잘못된 행위

교역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보고나 불평이 접수되면 그 위반 사실이 발생한 총회의 총회장이나 위임자는 교회, 교역자, 한국총회 및 교단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보고나 불평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사건의 사실 여부와 계속되는 보고나 불평의 저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면담한다.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불평 제기자는 위반 사실을 기재한 서식에 서명하여 한국총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미국 국외에서의 잘못된 행위

위반 행위가 해외선교부의 감독 하에 있는 미국 국외의 나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선교부가 관련된 일련의 자료를 관련 교역자의 거주 지역총회에 송부함으로 조사가 시작된다. 교역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청문회나 재판은 거주 지역총회에서 행해진다. 해외선교부는 아래의 방법으로 거주 지역총회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1) 한국총회에 대한 보고

해외선교부가 그 교역자나 선교사의 비행에 대한 보고를 접수한 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한국총회 총회장에게 전화나 편지로 그 내용을 보고하고 한국총회 총무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2) 비밀 서류의 송부

비밀 서류는 한국총회 총회장에게 송부하여 모든 정보가 유용

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된 지역의 책임자 지시 하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서류를 작성하고, 한국총회 총회장에게 송부하여 한국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추가 자료

해외선교부 또는 관련 지역의 판단으로 기본적 자료(비행장소에서 취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 항 제소의 준비 및 송부

충분한 조사 후 제소기로 결정한 경우 적절한 제소장을 준비하여 한국총회 사무실에 송부해야 한다. 만약 제소장에 서명하는 자가 없는 경우 조사를 진행한 한국총회 임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에 입각하여 제소장에 서명할 수도 있다. 헌법 제 2장 제 8 조 2항에 따라 제소를 받는 자에게도 제소장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알려야 한다.

제 6 항 한국총회 청문회 및 권징

1. 보고나 불평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럽게 사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소 교역자가 소속된 한국총회 총회장이 추천하여 한국총회 자결심의위원회가 청문회를 열도록 한다. 교역자는 문제가 해결될 희망을 갖고 청문회에 출두해야 한다. 피소 교역자가 청문회에 출두하여 청문회에서 주어지는 허락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사용하기 전에는 청문회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피소 교역자가 청문회에 출두를 거절하는 경우나 권리나 특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게을리 하고 있다는 증

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고 유죄 결정이 될 수 있다.

2. 권징

1) 징계의 원인

관련 교역자의 자백에 의한 것이든지 한국총회 실행위원회의 심리를 통한 것이든지 본 조 2항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의성회 원칙을 위반하여 그 유죄가 발견된 교역자는 징계 결정을 받게 된다.

2) 징계 범위의 결정

한국총회 실행위원회는 그 위반 사실이 제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복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자격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고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

- (1) 위반 사실 자체
- (2) 진지한 회개의 자세
- (3) 징계를 받아들이는 교역자의 태도
- (4) 협력의 자발성

3) 회복을 위한 징계 집행

한국총회가 유죄로 인정한 경우 징계는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성경에 일치하여 본 교단의 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본 조 7, 8항)

3. 자격증의 반납

징계 받은 교역자는 교역 자격증과 최근의 교단 신분증(fellowship card)을 본 총회 사무실로 반납하여야 한다. 복직 프로그램을 거치는 경우 자격증은 한국총회에 보관된다. 제명의 경우는 한국총회가 자격증을 본부총회 총무 사무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반납을 거절하는 것은 그 교역자에 대한 추가 제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제 7 항 복직(Rehabilitation) 프로그램

권징에 내재하는 기본 원칙은 회복에 있고, 인간의 양심은 자주 인간에게 심판과 자백에 이르게 하며, 때때로 공의는 자비와 함께 가장 잘 전달됨을 인정하므로 징계 받은 교역자를 복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잘 인도하려는 노력이 랑과 친절로써 이행되어야 한다.

복직에 관하여 아래 조항을 적용한다.

1. 기 본

한국총회 헌법 제 8 조 제 3항에 규정된 하나님의성회 원칙을 위반한 자는 제명 받지 않으려면 복직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복직은 자비에서 나온 특권이지 요청되거나 요구되는 권리가 아니다. 복권의 우선적 목적은 한 사람을 하나님, 배우자 그리고 가족에게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그 결과 교역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한국총회와 본부총회 자격심의 위원회의 재량에 따른다.

2. 기 간

복직 프로그램은 1년 이상 계속되어야 하며, 위반사항이 한국총회 헌법 제 8조 제 2항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되어

야 한다.

3. 절차 및 요구사항

교역자를 위한 구체적인 복직 프로그램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한국총회 실행위원회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복직 프로그램 요구사항

한국총회 자격심의위원회가 추천한 복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간과 조건은 우선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송부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된 후에 관련 교역자에게 전달된다.

(1) 자격정지

교역자는 복직 프로그램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2) 기간과 조건

복직 프로그램은 1년 이상 계속되어야 하며, 위반사항이 한국총회 헌법 제 8조 제 2항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본부총회 실행위원회는 복직 프로그램의 기간과 조건에 대한 지침과 정책을 세우는 권한을 갖는다.

(3) 사역의 범위

그의 사역 여부 및 범위는 한국총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는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본부총회 실행위원회가 세운 지침과 정책에 맞아야 한다.

(4) 한국총회 회원권

복직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타 지역총회로 이적을 할 수 없다.

(5) 공포

교역자가 자격정지 상태에 있는 동안 교역자의 이름이 교역자 명부에서 삭제되지는 않으며, 징계의 신분도 본부총회나

한국총회의 공식 간행물에 공포되지 않는다.

(6) 자격 갱신

교역자는 정기적인 방법으로 그 자격증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7) 중단된 사역의 감독

교역자의 사역이 복직 프로그램 하에 중단된 경우 개교회의 목회자나 지방회장의 감독 아래 개교회에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

(8) 분기 보고

해당 교역자는 한국총회 총회장에게 매 분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9) 교역의 제반 혜택

복직 프로그램 기간에도 교역자 단체 보험 및 교역자 보험 그리고 교역자 복지(MBA)같은 제반 혜택은 계속 제공된다.

(10) 프로그램의 집행

승인된 복직 프로그램은 한국총회 실행위원회에 의해 집행된다.

2) 한국총회의 복직 프로그램 진행 보고

한국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 징계 하에 있는 교역자의 복직 프로그램 진행보고서를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복직 프로그램의 완료

복직 프로그램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을 때 자격정지는 해제되며 교역자는 정상적인 신분으로 회복된다.

4) 복직 프로그램 기록의 이적

복직된 교역자가 타 지역총회로 이적을 신청할 때 본부총회 총무의 복직 보고 양식에 따라 한국총회가 복직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보고서는 타 지역총회로 보내는 이적증서에 첨부된다. 그 보고서는 한국총회와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된다.

4. 과거에 제명된 자의 자격

제명된 교역자가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총회는 상기 7항에 따른 적절한 복직 프로그램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복직 프로그램 요구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명된 교역자는 복직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격심의위원회의 판단에 교역자가 구제를 위한 복직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면 고려할 수는 있다.

제 8 항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복직 결정 송부

1. 한국총회 추천

1) 복직 교역자가 본 조 8항에 따라 복직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될 때 한국총회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추천된 복직 프로그램 기간을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한국총회는 관련 교역자에게 그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2) 제명

교역자가 8조 2항에 규정된 하나님의성회 원칙을 위반하여 유죄가 입증되고 복직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거나 실패하고 있다고 결정될 때 교역자의 자격은 제명으로 종결된다. 한국총회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제명 상신을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

회에 송부해야 한다. 한국총회는 관련 교역자에게 그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2.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 결정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한국총회의 상신을 숙고하며 한국총회가 취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동의한다. 만일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을 반송하여 한국총회가 재조사하며 재고하도록 한다. 한국총회는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위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본부총회 복권 기록 보존

권징 결정에 관련된 모든 타당한 정보는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의 향후 참조를 위해 보존된다.

4. 최종 결정 통보

본부총회 총무는 관련 교역자와 본 총회에 사건의 최종 결정을 통보한다.

제 9 항 상소의 권리

1.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상소 제출

교역자의 주도권에 의한 실효나 사임 이외의 경우에는 자격의 징계와 종결 결정에 대한 상소의 권리가 주어진다. 징계 받은 교역자는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가 우편으로 그 결정을 통고한 때부터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3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통고될 때 공식적으로 이 권리가 있음이 교역자에게 통지된다. 상소는 본부총회 총회장 사무실로 보내야 하며, 이전에 참작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 혹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사본을 한국총회 및 관련된 다른 지역총회에 보내야 한다.

2.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의 상소 처리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아래 방법 중의 하나로 상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사건을 한국총회로 반송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가 그 결정이 공의롭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건은 재검토와 재고를 위해 한국총회 실행위원회로 반송된다. 한국총회는 최종 결정을 위해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재조사의 결과를 보고한다.

2) 상소의 기각

(1) 상소 자격의 상실

피소자가 한국총회 청문회시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이용하려는 고의적인 태만의 증거가 밝혀지면 그 사건을 한국총회에 반송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는다 (본 조 4,5,6항).

(2) 불충분한 근거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상소를 승인하고 그 사건을 한국총회에 반송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본부총회 총대회의에 회부할 권리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의해 상소가 기각된 징계 받은 교역자는 본부총회 총대회의에 상소할 수 있다. 피소 교역자는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가 우편으로 그 결정을 통고한 때부터 30일 내에 본부총회 총대회의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는 본부총회 총회장

사무실로 보내야 하며, 이전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 혹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사본을 한국총회 및 관련된 지역총회에 보내야 한다. 본부총회 총대회의가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제 10 항 제명의 공포

한국총회는 본부총회 총무 사무실로부터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의해 제명된 교역자의 이름을 공포하는 것이 허락되어 통보받기 전까지는 그 교역자의 이름을 공포하지 않아야 한다. 제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상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명된 교역자에게 30일 기한이 주어진다.

제 11 항 자격의 복직

1. 승인

복직을 위한 신청은 신청자가 한국총회를 통하여 제출한다. 그 신청은 제명이 행해진 한국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소 시간 경과

제명된 교역자가 복직을 신청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 최소 1년은 경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총회 헌법 제 2장 제 8조 2항 1목 교역자로서 온당치 않은 행위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제명된 교역자는 최소 2년은 경과해야 한다. 기간은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에 통보된 자격 종결 보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한국총회 실행위원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참조 제7조 5항 갱신과 복권)

3. 필수적인 복직 절차

제명된 교역자가 복직을 신청할 때는 본 조 7항 4목에 기술된 복직 절차를 따라야 한다.

4. 본부총회 총대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선택권

본부총회 자격심의위원회는 교역자의 자격에 대한 복직을 차기 본부총회 총대회의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이는 본부총회 총대회의에 그 사건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 경우 교역자의 복직 문제는 전적으로 본부총회 총대회의에 일임될 수 있다.

5. 복직 수수료

복직 신청을 할 때 교역자는 신청서와 함께 50불의 복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 12 항 통 지

한국총회나 본부총회는 비치된 교역자의 최종 주소로 통지할 때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편물이 되돌아 온 경우 합법적인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한국총회나 본부총회에 제공하는 것은 교역자의 책임이다.

제 9 조 개정(改定)

제 1 항 개정안 발의

본 조례의 개정은 원하는 자가 한국총회 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첨부한 개정안을 사무 총회 개회 90일 이전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우편물로 헌법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 발의된다. 전자우편(E-

mail)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총회 개최 90일 이전까지 헌법위원장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발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항 개정 절차

본 조례의 개정은 한국총회의 사무총회에서 결의된다. 이를 위하여 헌법위원장은 발의된 개정안을 실행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총무로하여금 사무총회 개최 40일 이전까지 한국총회의 전 회원에게 우편으로 송달케 한다. 개정안 채택은 사무총회에 출석한 회원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조례 개정안의 채택이 가결된 경우, 한국총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제 3 항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는 그 수정을 원하는 자가 한국총회 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첨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사무총회 개최 20일 이전까지 헌법위원장에 제출함으로 발의되며, 그 절차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항 준용 규정

본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총회의 헌법과 조례 그리고 한국총회의 헌법과 조례 순으로 준용한다.

제 5 항 효력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 1 조 경과 규정

본 조례 시행 당시 임기 만료되는 모든 선출직 임원은 본 조례에 따라 선출된다.

제 2 조 이월된 의사 결정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한국총회 사무총회에 이월되어 계류 중인 사안은 본 헌법과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폐기되지 않고 결의될 수 있다.

개교회 운영 세칙 (Local Church Rules)

제 1 조 정치

제 1 항 목적

본 개교회 운영세칙은 한국총회 헌법 및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총회 내(內) 개교회의 행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항 개교회 운영세칙의 의의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성장을 도모하고(요 21:15-17),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온전히 활용케 하며(고전 14:40), 불법의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해하지 못하게(살후 2:3-10) 하기 위하여 교회가 받은 의무와 경륜을 충실히 행하며 온전케 하는데 의의가 있다(히 13:17).

제 3 항 공동의회

1. 조직

- 1) 개교회 회원으로 등록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침례를 받은 만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조직한다.
- 2) 6개월이라 함은 통상 정기 또는 임시공동의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되 분쟁이 있을 경우, 상회에 개 교회 분쟁의 중재를 청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3) 등록한지 6개월 이상 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분쟁 조정을 청원한 일자를 기준하여 그 이전 6개월 중 예배에 무단으로 결석한

자나 타 교회에 등록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임원

개교회의 담임교역자는 공동의회의 의장을 겸하며, 목회협력회(목회협력회가 없는 교회는 제직회) 서기가 공동의회 서기를 겸한다. 단, 담임교역자 께위 시에는 해당 지방회장 혹은 지방회장이 임명하는 지방회 목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소집

공동의회는 반드시 담임 교역자가 소집한다.

- 1) 공동의회 소집은 일주일 이전에 공고한다.
- 2) 회의 정족수는 그날의 출석수로 한다.
- 3) 공동의회는 정기와 임시로 모일 수 있다.
- 4) 정기 공동의회는 1년간 교세보고와 각 기관 사업보고 및 계획을 인준하며, 교회 재정보고 및 예산안을 통과한다.
- 5) 임시공동의회는 소집된 목적에 의하여 제시된 안건만을 결의한다. 단, 한국총회 헌법에 위배된 결의는 일체 무효가 된다.
- 6) 공동의회 재정보고와 사업보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7) 교역자 청빙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피택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1회 투표에 한한다.
- 8) 교회 건물의 이전, 병합 및 매매 결의 투표는 2주 전에 후보에 공고하고 재적 교인 3분의 2 이상 출석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9) 개교회가 한국총회를 이탈하려고 할 때는 담임교역자는 반드시 해당 지방 회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방회장은 4주 전에 공동의회 투표인 명단과 함께 후보에 공고하고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해당 지방회장과 한국총회 임원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단 한국총회가 지방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항 장로회

1. 조직

장로회는 담임 교역자와 장로로 구성한다.

2. 임원

회장 1인, 서기 1인을 두며 회장은 담임 교역자가 된다.

3. 소집

정기 소집은 장로회 결정에 따르며, 임시소집은 담임교역자가 결정한다.

4. 회의 정족수

회장과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5. 직무

- 1) 장로회는 교인의 신앙 향상을 지도한다.
- 2) 병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심방한다.
- 3) 장로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4) 본 총회와 지방회가 소집하는 제반회의(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대표를 파송한다.
- 5) 교역자의 청빙 천거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후보자를 천거한다.
- 6) 교회 안에 권징의 직무를 담당한다.
- 7) 담임교역자를 도와 구역활동, 예배, 전도 등의 영적인 일을 한

다.

8)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담임교역자를 돕는다.

9) 교회의 예식에 담임교역자를 돕는다.

6. 특례

개교회는 한국총회 개교회 운영세칙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미 당회가 구성된 교회는 개교회의 재량에 맡긴다.

제 5 항 목회협력회

1. 조직

장로회를 조직할 수 없는 교회인 경우, 담임 교역자와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목회협력회를 구성한다. 목회협력회 회원수는 개교회가 정한다.

2. 선출

정기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첫 목회협력회 조직 시 일년직, 이년직, 삼년직을 균등하게 선출한다.

3.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휴무한 뒤 연임할 수 있다.

4. 보궐

보궐 시는 차기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잔여 임기 동안 시무한다.

5. 소집

정기회의는 목회협력회에서 결정하며 임시회의는 담임교역자가 결정한다.

6. 회의 정족수

회장과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한다.

7. 임원

회장은 담임교역자가 되며 서기는 담임교역자가 임명한다.

8. 직무

- 1) 목회협력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2) 결산예산안을 보고하고 편성한다.
- 3) 연중 교회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9. 개교회 자율성

개교회 형편에 따라 목회협력회를 둘 수 있다.

제 6 항 제직회

1. 조직

제직회는 담임 교역자와 부교역자 및 사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담임 교역자가 되고 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직무

제직회의 필요에 따라 제직회 내에 각 부서를 두고 목회협력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1) 교회의 건축, 증축, 제반 수리 및 재산의 매매 등의 일을 처리한다.
- 2) 교회에서 행하는 주일학교 사업을 협조한다.
- 3) 재정의 수입,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역자의 생활비 및 후생비를 충당한다.

3. 소집

제직회는 정기 및 임시로 구분하고 담임 교역자가 소집하되 그 시기는 소집자가 교회 형편에 따라 결정하며 1주 전에 후보에 공고해야 한다.

4. 회의 정족수

회장과 참석 회원으로 한다.

제 7 항 장로

1. 장로의 의의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 받아 지방회에서 시취하여 해당 지방회의 안수로 장립이 되며 담임 교역자를 보좌하여 영적인 일에 힘쓰는 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다.

2. 장로의 자격

장로는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계속 봉사한 안수집사로, 딤편 3:1-4절에 거리낌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무흠하고 성령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로서 장로 시취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3. 장로의 선택

- 1) 침례 교인 30명에 장로 1인씩 세울 수 있다.
- 2) 담임 교역자 또는 장로회에서 천거한 후보자를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에 피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투표일로

부터 365일 내에 재투표를 허락하지 않는다.

- 3) 개교회는 10일 내에 소속 지방회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4) 소속 지방회는 피택 받은 장로 후보를 본 총회 총무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장로의 안수

개교회는 피택받은 장로 안수 청원서를 해당지방회에 제출하고, 지방회의 장로 시취에 통과한 후 6개월 내에 해당 지방회 주관 하에 안수를 받는다.

5. 전입 장로

1) 한국총회 내의 전입 장로

한국총회 내 타 교회로부터 전입한 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협동장로로 1년 이상 봉사 후 담임 교역자 또는 장로회의 천거와 해당 지방회의 허락을 받은 후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쳐 시무장로로 취임하게 한다. 투표는 1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타 교단 전입 장로

타 교단으로부터 전입한 전입 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협동장로로 소속 교회에서 1년 이상 봉사한 후 담임 교역자 또는 장로회의 천거로 공동의회 1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해당 지방회의 시취를 받아 시무장로로 취임하게 한다.

3) 협동장로의 자격

한국총회 내 타 교회나 타 교단으로부터 전입한 장로는 전입일

을 기준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후 담임교역자의 천거 또는 장로회의 결정으로 협동장로가 될 수 있다.

6. 장로의 임기 및 휴직과 사직

장로는 종신직이나 시무는 65세로 한정하며 그 후에는 자동으로 은퇴 장로가 된다. 단 본인이 노후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혹은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회가 휴직 또는 사직케 한다. 또한 장로가 이단 사설을 주장하거나 악행이 있을 경우,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총회가 사직케 한다(행 24:16; 롬 9:1; 빌 2:15; 벧후 2:14; 딤후 1:5-9; 딤후 3:13).

7. 원로장로

소속 교회에서 10년 이상 근속 시무한 장로로서 66세 이상 된 자는 해당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 원로장로로 추대한다.

제 8 항 권사

1. 권사의 의의

권사는 여자로서 안수받지 않는 종신직이며 소속 교회의 제직회원이 되며 담임교역자를 도와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권고하며, 특별히 병자와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향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스러운 직분이다.

2. 권사의 자격

권사는 본 교회를 무흠히 5년 이상 충성스럽게 봉사한 여집사로 성령세례를 받고 가정에 얹매이지 않아야 하며 장로회 또는 담임교역자의 천거를 받고, 공동의회에서 1회에 한해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담임교역자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연령은 45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3. 전입 권사

타 교회로부터 전입한 권사는 1년 이상 무흠히 본 교회를 섬긴 후 담임 교역자나 장로회의 천거로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 교역자가 임명한다.

제 9 항 집사

1. 집사의 직무

집사는 각자 기능에 따라 선교, 교육, 재무, 관리 등 담임교역자를 보좌하여 교회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2. 집사의 구분 및 자격

1)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서리집사로 교회를 5년 이상 섬긴 자로 하되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계속 봉사한 남자 집사로 한다. 안수집사는 성령세례 체험과 딤편 3:8-13에 거리낌이 없는 자로 담임교역자 또는 장로회 천거로 공동의회의 1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해당 지방회의 시취를 거쳐 안수를 받는다.

2)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침례를 받은 자로서 십일조와 봉사를 충실히 하며 딤편 3:8-13절에 거리낌이 없는 무흠한 자라야 하며, 담임교역자의 임명을 받은 자라야 한다.

3. 집사의 임기와 사직

안수집사는 종신직이나 시무는 65세로 한정한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가 지나면 자연 사직되며 다시 임명을 받을 수 있다.

- 1) 한국총회 내 타 교회로부터 전입한 안수집사는 1년 이상 무흠히 봉사한 자로 장로회 또는 제직회의 천거로 공동의회에서 1회 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고 본교회 안수집사가 된다.
- 2) 타 교단에서 전입한 안수집사는 1년 이상 무흠히 봉사한 자로 담임 교역자 또는 장로회의 천거에 의해 공동의회에서 1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해당 지방회의 시취를 거쳐 안수집사로 시무한다.

제 2 조 담임 교역자 청빙

제 1 항 청빙 및 전출임

담임 교역자를 청빙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개교회가 속한 지방회 교역자

개교회가 소속 지방회에 속한 다른 교회의 담임 교역자를 청빙하고자 할 경우,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를 소속 지방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방회는 청빙서를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청빙받은 자에게 전달하고 행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해당 교회 간에 청빙의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지방회는 양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듣고 교회의 평화와 덕을 세우도록 자세히 상황을 살핀 후에 행정위원회에 보고한다.

2. 개교회가 타 지방회에 속한 교역자를 청빙

개교회가 소속 지방회에 속한 다른 교회의 교역자를 청빙하려면 해당 지방회 상호간의 원만한 협조로 교역자의 청빙 및 전·출입을 검토하고 행정위원회에 보고한다.

3. 타 교단 교역자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이 허가 되지 않은 타 교단 교역자는 한국총회 산하 교회에 청빙될 수 없다. 단, 가입이 가능한 교역자는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청빙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2 항 청빙위원회

1. 개교회의 청빙위원회는 장로회원으로 구성하되 장로회가 없는 교회는 목회협력회 또는 제직회가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빙위원장은 지방회 임원회가 임명한다.

제 3 항 담임 교역자의 청빙투표

1. 개교회로 청빙을 받는 교역자는 개교회의 정기 또는 임시 공동의회에서 단 1회의 청빙투표를 실시하여 그 청빙이 결정되며 이때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한국총회에서 파송된 교역자의 청빙투표는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청빙투표를 받지 않은 임시 담임교역자에 대한 유임투표도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부교역자 및 보조 교역자의 청빙과 사임은 담임교역자의 천거와 장로회(장로회가 없는 교회는 목회협력회 또는 제직회)의 인준으로 한다.

5. 담임교역자가 사임할 경우 부교역자 및 보조 교역자들도 일괄적으로 사임한다.
6. 모든 청빙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제 3 조 교역자의 사례와 복지

제 1 항 교역자 사례

담임교역자에 대한 사례는 사례비, 주택비, 교통비, 도서비, 접대비, 자녀 교육비, 의료보험비, 세금 등 항목별로 나누어 정하고 사례비는 1년을 14개월로 계산한다. 부교역자는 교회 형편에 맡긴다.

제 2 항, 교역자의 복지

1. 교역자의 보험

개교회는 담임교역자의 복지연금을 위하여 년 1개월분의 사례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월 분할하여 한국총회에 납부한다.

2. 원로목사

- 1)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주의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하다 은퇴한 담임 교역자에게 교회는 교역자의 여생을 위하여 은퇴 년도 연봉의 75%를 은급(연금)으로 여생동안 지불하여야 한다.
- 2) 은퇴 연령은 제한이 없다.
- 3) 본인이 소천시에는 은퇴 년도 연봉의 50%를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 4) 20년 이상 시무한 부교역자의 경우는 개교회에 맡긴다.

3. 불의의 사고

본 교회는 담임 교역자, 부교역자 또는 보조 교역자들이 성직 수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불구가 되었을 시 합당한 위로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퇴직금

- 1) 제 2항 1.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 교역자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본 교회를 사직할 때에는 교회는 퇴직 해당년 1개월분의 사례비를 근무 연한수로 가산하여 퇴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2) 부교역자의 경우는 개 교회에 맡긴다.

제 4 조 성도의 생활규범

제 1 항 생활규범의 목적

성도란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별된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도의 생활은 신앙의 결실이므로(마 7:17) 마땅히 성경과 교리에 입각하여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생활이어야 한다(엡 5:18-21).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교회의 신조와 본 교단의 헌법을 지키게 하여 거룩하고 참된 생활을 하게 함에 있다.(갈 5:14-24)

제 2 항 성도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여 성경봉독과 설교를 삼가 들어야 하며 예배와 성례에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하게 참

여하여야 한다.

2. 성경을 매일 읽으며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
3.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주린 자, 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등을 긍휼히 여겨 돌봐 주어야 한다.
4. 성경에 가르친 바 십일조 및 헌금과 헌물을 드려야 한다.
5.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여야 한다.
6.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야 한다.
7.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신분에 알맞은 생활을 하여야 하며 금전 대차 행위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
8. 술과 담배 상용과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9.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바니 일부일처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남녀간 중혼은 금지한다.
10. 신자 가정의 자녀는 믿는 배우자와 결혼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혼에 대해서는 교역자에게 문의하여 지도를 받으며 결혼 주례는 목사가 집례하여야 한다.
11. 남녀간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으며, 이혼한 자의 전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는 동안에는 재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12. 허탄한 풍설을 날조하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13.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오락을 행치 말고 비열한 속가를 부르지 말며 신앙에 저해되는 서적을 읽지 말아야 한다.

제 3 항 신앙생활의 규범실행

생활규범은 우리가 마땅히 지킬 것이로되 우리 중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여 본 교회의 명예와 교역자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빛을 가릴 때 교회가 권면하여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회개치 아니할 때는 권징 규범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 5 조 권징

제 1 항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며 성도가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덕을 끼칠 경우 교회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권고 및 징계함을 뜻한다.

제 2 항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성도의 비성경적 악습이나 악행을 방지하여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권징 해당자를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고 다시 세워주는 데에 있다.

제 3 항 범죄

성도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데 방해되는 모든 언행 심사를 뜻한다.

제 4 항 권징의 사유

1. 교회 안에서 한국총회 교리에 위반되는 이단 사설을 따르거나 교회 안에서 고의적으로 유포하여 부덕을 끼치는 행위
2.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위반한 결혼을 포함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3. 교회의 동산, 부동산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유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4.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불만을 갖고 성도들을 선동하여 파당을 조성하는 경우
5. 상회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6. 한국총회 교리에 적합한 설교를 비난하거나 비난 받도록 선동하는 행위
7. 논쟁을 일삼거나 비협조적인 행위
8. 폭언 또는 폭행으로 교회에 부덕을 끼치는 행위
9. 예배와 회의를 고의적으로 훼방하는 경우
10. 제직이 정기예배를 무단으로 1개월 이상 불참하는 행위
11. 채무를 습관적으로 지는 행위
12. 제직의 자격에 미달하는 행위(헌법 제 2장 제 8조 2항 참조)
13. 지나친 농담, 유언비어 날조, 주초(酒草)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행위

제 5 항 권징의 발의

권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임교역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 징계위원회는 장로회로 하고 장로회가 없는 교회는 목회협력회나 제직회로 구성한다. 단, 사안이 중대한 경우 상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항 권징의 종류

1. 권면

개인에게 징계의 사유를 설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이때 본인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조용히 수습하고, 불복종하거나 부인할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대면 시킬 것이며 공중 앞에 책벌을 선언해야 한다.

2. 근신

권징 대상자는 담임교역자의 재량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기도, 제직회 참석, 성찬식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 자격 정지

담임교역자의 재량에 의해 제직의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킨다.

4. 자격 박탈

제직 자격의 박탈은 자격의 정지를 의미하며 장로는 행정위원회에서, 안수집사는 해당 지방회에서 한다.

5. 제명

개교회 회원의 명부에서 이름을 제명하고 출교(出敎) 시킨다.

제 7 항 권징 기간 연장

권징 해당자가 범법 행위를 계속할 경우 징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항 권징의 해제

권징의 대상자가 권징을 받은 후 자숙하고 근신하여 변화된 확실한 증거가 보일 경우 장로회, 해당 지방회 또는 행정위원회가 권징 대상자의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 9 항 상소

권징의 대상자가 권징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권징 결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제 6 조 의무

제 1 항 교회의 의무

1. 한국총회 산하 개교회는 한국총회 의무금으로 매월 결산액의 1%를 한국총회에 매월 납부해야 한다.
2. 한국총회 산하 개교회는 목회협력회 회의록, 교세, 예산총액 등을 한국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항 교역자의 의무

1. 한국총회에 소속된 교역자는 실행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의무적으로 한국총회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2. 교회 및 교역자의 주소변경 사항을 4주 내에 소속 지방회와 한국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교회 개척

제 1 항 교회 개척

1. 지방회 내 교회 개척은 한인 거주자의 수와 거리에 의하여 소속 지방회가 결정한다.
2. 지방회 내의 교회 개척은 개척 예정지에서 직경 1마일 내의 가장 가까운 교회의 동의와 소속 지방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부교역자 자신이 시무 중인 교회의 성도들을 선동하여 분리 독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개교회가 전도 목적으로 개척교회를 세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이사회

개 교회 이사회는 회의, 선거, 안건 결의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준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이사는 목회협력회(목회협력회가 없는 교회는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회의 이사는 타 교회에 등록하였거나 무단히 1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치 않을 경우 이사직을 상실한다.
3. 이사회의 결정은 법인(Incorporation) 정관 규정에 한하며 목회협력회의 결정사항에 우선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개교회법은 한국총회 개교회 운영세칙보다 우선할 수 없다.

행정 및 실행위원회 내규

1996년도

제 1 차 행정위원회

일 시: 1996년 10월 23일

장 소: 시카고

1. 장로의 전도사 자격 소유자(이중자격)에 대한 처리 건.

절대로 이중자격을 소유 할 수 없으며, 그중 하나만 소유해야 한다. (예: 장로, 전도사)

제 3 차 실행위원회

일 시: 1996년 5월 29-30일

장 소: 서울(한국)

1. 장로, 안수집사 시취 건.

장로, 안수집사 고시 출제는 총회가 하고 시취는 지방회에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1997년도

제 4 차 실행위원회

일 시: 1998년 2월 9-11일

장 소: Los Angeles

1. 해당 지방회를 거치지 않고 실행위원회에 접수되는 청원 건.

해당 지방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접수되어 실행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먼저 해당 지방회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1999년도

제 1 차 실행위원회

일 시: 1999년 6월 7-8일

장 소: Garden Suite Hotel(Los Angeles)

1. 실행위원회에 상정할 모든 안건을 행정 위원회의 조율을 거치기로 한다.
2. 실행위원 회의의 모든 결의 사항을 출석의 과반수로 가결하기로 한다.

제 2 차 실행위원회

일 시: 1999년 8월 9-10일

장 소: Orlando(Florida)

1. 개 교회 총대자격 건.
평신도 총대권은 상회비 의무를 다한 교회에만 부여하기로 결정하다.
2. 교역자 복지(배우자 생명보험 가입)의 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교역자 배우자들의 생명보험을 총회에서 가입하기로 하다.

제 4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0년 2월 7-9일

장 소: Hanford Hotel(Los Angeles)

1.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헌법 개정을 심의하고 개정안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한다.
 - 1) 상회법 (母法)이 개정될 경우
 - 2) 실행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 3) 총회원의 합법적인 청원이 있을 경우
 - 4) 헌법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헌법해석 권한

헌법위원회는 총회의 회기 및 비회기 기간 동안 실행위원회에 서문을 요청할 경우 헌법의 해석권한을 갖는다.

3. 목사 고시합격 판정은 실행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기로 하다. 목사고시 합격 과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다.
4. 제5차 정기총회 명칭을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한국총회 제19차 정기총회(통합 5차)”로 하기로 하다.

2000년도

제 1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0년 4월 5일

장 소: 순복음 달라스 교회

1. 교단 행정과 회의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신규 회원 가입을 관장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는 부총회장과 총무가 된다.
2. 실행위원회에서 검토 처리되었던 일들에 대해 위원들은 기밀을 유지하기로 하다.
3. 차기 정기총회부터 명칭에서 (통합 5차)라는 말을 삭제하기로 하다.

제 2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0년 5월 18일

장 소: L/A 총회 사무실

1. 2000년 5월 18일자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한국총회 (Assemblies of God Full Gospel Korean Council)를 해산하고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The Assemblies of God Korean District Council)로 새로 설립한다. 순복음 한국총회의 EIN으로 되어 있는 은행구좌를 폐쇄하고 총회의 새 명칭 구좌로 개설한다.

2. 생명보험 가입 교역자 중 회비의 50% Discount 해주던 것을 중지하다.

제 3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0년 10월 24-25일

장 소: 글렌우드 스프링

1. 신규 교역자 가입 시 목사 3인의 추천서를 받되, 이전 교단 지방 회장의 추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신규 가입(타 교단 전입 포함)하는 목사와 전도사는 오순절 신학 및 본 교단 헌법과 하나님의 성회 역사를 마쳐야 한다.

제 4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1년 2월 5-6(월-화)

장 소: L.A Hanford Hotel

1. 해외 선교사의 설립교회가 본 총회 교회 가입 신청 시, 본 총회 산 하 교회로 인정하고 부수적인 행정 절차는 행정위원회에서 처리 하기로 하다.
2. 총회 사무실과의 공식적 대화는 녹음을 하도록 하다.

2001년도

제 3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1년 11월 13일

장 소: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1. 신규 회원 자격심의 중 인터뷰 과정을 해당 지방회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2. 개척교회 지원관계는 국내선교위원회에 책정된 지원 예산을 소속 지방회로 이관키로 하되 해당 지방회는 국내선교위원회 내규에 의하여 심의 집행하기로 하다.

제 4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2년 2월 12일

장 소: L.A. Hampton Inn 회의실

1. 교역자가 사임을 구두나 서면으로 지방회에 통보하고 지방회가 접수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회장은 사임교회를 관장한다. 구두나 서면으로 사임 통보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임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방회장이 해당 교회를 관장하기로 하다.

2002년도

제 1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2년 6월 5일

장 소: 순복음뉴욕교회

1. 증경 총회장 회의를 개최하되, 항공비 지원은 목회를 하지 않는 증경 총회장에게만 제공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하다.

제 2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2년 9월 9-11일

장 소: 샌프란시스코 라마다 인 회의실

1. 명예장로 및 명예권사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개교회에서는 명예장로 및 명예권사 제도를 사용치 않기로 하다.
2. 소명은 받았으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자격이 없는 경우 별과를 신설하여 목회자로 양육하는 방안을 신학교 이사회에서 연구하여 실행위원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다.

2003년도

제 1 차 실행위원회의

일 시: 3월 3일

장 소: 뉴욕 순복음교회 당회실

1. Lapsed 된 Minister는 교역자 명부에 Lapsed Minister 명단으로 이전하기로 하다.

2004년도

제 3 차 실행위원회의

일 시: 2004년 11월 9일

장 소: Texas Station, Las Vegas, NV

1.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목사고시를 신청할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2005년도

제 1 차 실행위원회의

일 시: 2005년 6월 13일

장 소:

1. 5년 이상 정한 회비를 완납하고, 65세 이상 되어 은퇴한 교역자는 자신의 생명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총회 직원 생명보험은 본인이 원할 경우 생명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혜택을 받도록 하다.

2006년도

제 2 차 실행위원회의

일 자: 2006년 10월 25일

장 소: Glen Eyrie Conference Center, Colorado Springs, CO

1. 타 교단 (감리교 권사) 전입자에 관한 건.
 - 1) 감리교 권사는 안수집사의 직분으로 전입을 받는다.

2) 장로 시취 후 임직을 하지 않고 타 교단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헌법 제3장 제1조 제7항 4. 장로의 안수’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개 교회 재산 정리에 관한 건.

개 교회 재산권에 관하여 실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본 총회 헌법 제2장 제6조 제2항 본 총회 관할교회에 의거하여 공동의회 회원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개 교회 재산의 매입, 매각은 총회의 감독을 받는다.

2007년도

제 1 차 실행위원회의

일 자: 2007년 9월 11일

장 소: Holiday Inn Hotel(Buena Park, CA)

1. 선교사들에게 신분증명(ID card)을 발급하기로 하다.

제 3 차 실행위원회의

일 시: 2008년 2월 4-6일

장 소: Holiday Inn Hotel(Buena Park, CA)

1. 분기별로 각 위원회가 총회에 업무 및 회계보고를 하고, 각 위원회가 필요한 예산은 해당 위원회가 지출명세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무(재무)가 이를 검토하여 재정을 지출한다.

2. 국내선교위원회가 수혜 후보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려 할 때에는 해당 지방회와의 긴밀한 협의 및 추천을 거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단, 미자립교회 지원은 지방회 내지선교부에 위임한다.

3. 조건부 가입자 건

헌법이 요구하는 과목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교역자가 4개월이 되어도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보하여 이수하도록 촉구하고, 6개월이 되어도 이수를 완료하

지 못할 때에는 가입을 취소하기로 하다.

4. 고시위원들에게 \$300을 전례대로 사례하기로 하다.

2008년도

임시실행위원회

일 시: 2008년 4월 23일

장 소: 순복음뉴욕교회 회의실

1. 총회 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실행위원회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 위원은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제 1 차 실행위원회의

일 시: 2008년 6월 23일- 25일(월-수)

장 소: Holiday Inn, Buena Park, CA

1. 본 총회 내에 차세대를 위한 fellowship 결성을 연구하기로 하다.
2. 회심 전 이혼한 경우 Credential Application의 pre-conversoosn divorce form에 있는 District presbytery에 출두하여 증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가 그 증언을 듣고 처리하기로 하다.

제 2 차 실행위원회의

일 시: 2008년 9월 8일 - 9일

장 소: Embassy Suites, Seattle-North/Lynnwood

1. 선교사 회비 면제 건.
해외 선교사들에게는 생명보험을 제외한 회비를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하다.
2. 실행위원회 안전 상정에 대하여는 개최일 15일 전까지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정 안전을 올릴 경우 상정하는 회원들의

사인을 반드시 첨부하는 것으로 하다.

2009년도

제 1차 실행위원회의

일 시: 2009년 6월 22-24일(월-수)

장 소: 사파나무교회(Tucson)

1. 정기총회 개최 일 고정 건.

정기총회 개최일은 매년 4월 네번째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하며 장소는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복지기금 관리 및 지출 건.

복지기금은 총회에서 관리하고 복지혜택에 관하여는 복지위원회의 품위를 받아 교단 총무와 복지위원장이 사인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제 2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9년 8월 3-4일(월-화)

장 소: Renaissance Hotel(Orlando)

1.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 건.

창립예배, 5주년, 10주년, 5년 단위로, 입당, 헌당, 목사 이.취임 식 등에 화환대 200불을 지출한다.

2. 상임위원은 복수로 다른 상임위원직을 겸임 할 수 없다.

제 3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09년 11월 12일(목)

장 소: Hyatt Place(Overland Park, KS)

1. 총회 산하 교회의 창립 10주년 마다 총회에서 교회에 축하패를 제작해 주기로 한다.

제 4 차 실행위원회

일 시: 2010년 2월 1일(월)

장 소: Holiday Inn.(Buena Park, CA)

1) 목사 안수는 65세까지 제한하기로 한다.

2010년도

제 1 차 실행위원회의

일 시: 2010년 6월 22일(화)

장 소: Promise Ministries

1. 총회의 공문서를 발행할 때에 행정위원회나 실행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총회장 단독 사인으로, 기타 시행사항 이나 총무 전결 사항은 총무 사인만으로 공문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제 2 차 임시 실행위원회의

일 시: 2010년 7월 22일(목)

장 소: 전화 회의

1. 목사, 전도사 고시료를 목사-500불, 전도사-300불로 조정하고, 고시 응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로 목사고시 응시자자는 “후보자 질의서”와 “사실 동의 서약서”를 전도사고시 응시자는 “후보자 질의서”와 “사실 동의 서약서”를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다.
2. 신임 가입자(타 교단 전입자) 가입비를 목사-500불, 전도사-300불로 조정하고 “사실 동의 서약서”를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다.

제2차 실행위원 회의

일 시: 2010년 9월 27일(월)

장 소: Holiday Inn.(Buena Park)

1. 모든 상임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 전에 총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도

제2차 실행위원 회의

일 시: 2011년 10월 10-11일(화-수)

장 소: AIRPORT HOTEL(한국 김포)

1. 복지위원회 복지혜택 중에 수혜 대상 변경 건
 - 1) 회원의 부모 별세 시 \$200.00 지급
 - 2) 단 현재 복지금의 수혜대상 자격인 65세가 되기 전이라도 회비를 충실히 납부하고 회원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한 회원이 미국을 떠나게 되므로 부득이 교단을 떠나게 될 때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방회장을 경유하여 총회 총무에게 보고 하고 복지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액수에서 30%의 페널티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2012년도

제1차 실행위원 회의

일 시: 2012년 7월 9-11(월-수)

장 소: New Jersey(Sheraton Hotel)

1. “재정 자립이 불가능한 1.5-2세대 사역자의 입회비와 회비를 면제”하기로 하다.
2. 재정 자립이 안 되는 “미 자립교회 및 개척교회 교역자의 총회 회비는 지방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1년간만 회비를 면제하고 본부 총회 자격 갱신을 허락하기로 하다.
3. 목사와 전도사를 인터뷰 할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를 함께 인터뷰 하며, 목사는 실행위원회에서, 전도사는 총회 총무와 해당 지방회장이 하기로 하다.

2013년도

제3차 실행위원 회의

일 시: 2013년 2월 4-6(월-수)

장 소: 감사한인교회

1. 본 총회 회원으로서 지방회 회의 개최 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지방회 회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기로 하다.

제2차 실행위원 회의

일 시: 2013년 9월 30일-10월 2일(월-수)

장 소: 뉴욕 프라미스교회(New York)

1. 가입이나 전입 및 복직자의 회원 자격에 대한 건.
 - 1) 본 총회에 가입이나 전입, 그리고 복직을 신청하는 교역자의 가입 자격심사를 마치고 본부총회에 상신한 후 본부총회에서 가입을 불허할 경우 해당 교역자의 본 총회 회원 가입은 자동 취소된다.
 - 2) 본부총회에서 가입이 불허된 사안대하여 6개월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 3) 본 한국총회의 회비는 본부 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부터 납부한다.
 - 4) 2012년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2013년 5월 31일 이전의 준회원은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2. 본 총회 산하 교회의 결혼에 관한 내규 건
본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전한 결혼 이외의 그 어떤 형식의 결혼식을 불허하고 개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금지한다.

2014년

제1차 실행위원 회의

일시: 2014년 7월 22-23일(화-수)

장소: Mexico

1. 2012년도 제2차 실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시 항공료 지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항공료 지원은 하지 않기로 하다.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Assemblies of God Korean District Council

605 Broad Ave. Suite 205, Ridgefield, NJ 07657

Tel. (201) 941-1050, Fax. (201) 941-1840

e-mail: agkoreandistrict@gmail.com

www.agkdc.org